

教育學碩士學位論文

宣城誌 研究

2002年 6月

安東大學校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李 芙 京

# 宣城誌 研究

指導教授：金 喜 坤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 專攻

李 芙 京

李 芙 京 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學位論文審查委員

委員長： (印)

委員： (印)

委員： (印)

安東大學校大學院委員會

# 목 차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宣城誌』의 편찬자와 편찬목적 .....	4
1. 편찬자의 가계 .....	4
2. 편찬자의 생애 .....	6
3. 편찬목적 .....	9
제3장 『宣城誌』의 체제 .....	13
1. 『宣城誌』 이전에 편찬된 지리지의 체제 .....	13
2. 『宣城誌』의 체제상 특징 .....	16
제4장 『宣城誌』의 내용 .....	20
1. 자연환경 .....	20
2. 역사와 인물 .....	23
3. 교육과 향촌사회 운영 .....	40
제5장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 .....	47
제6장 맺음말 .....	49
참고문헌 .....	53
영문초록 .....	55
부록. <별표 1>. 「歷官錄」에 나타난 조선시대 예안현감의 재임실태	

## 표 목 차

<표 1> 權是中의 가계도 .....	4
<표 2>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항목 비교 .....	14
<표 3> 『宣城誌』 이전에 편찬된 私撰邑誌 .....	15
<표 4> 邑誌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항목 .....	16
<표 5> 『승람』의 예안현 조와 『宣城誌』 항목 비교 .....	17
<표 6> 『咸州志』, 『永嘉誌』, 『宣城誌』의 항목 비교 .....	18
<표 7> 『宣城誌』 掌面條와 『宣城邑誌』 方里條의 비교 .....	25
<표 8> 시기별 수령 재임기간 .....	28
<표 9> 조선시대 예안현에 부임한 수령의 품계 .....	30
<표 10> 조선시대 예안현의 善治官名 .....	31
<표 11> 각리 사적에 기록된 성관별 인물 .....	39
<표 12> 約條의 罰條 條項 .....	44
<별표 1> 「歷官錄」에 나타난 조선시대 예안현감의 재임실태 .....	57

## 그 립 목 차

<그림 1> 조선시대의 예안현 .....	21
------------------------	----

## 제1장 머리말

地方史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地理誌는 중요한 기초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왕조 이전의 지리지는 대부분 현전하지 않으며, 여러 기록들에서 단편적으로 그 존재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은 거의 관찬지리지로서 史書의 후반에 지리지가 附錄으로 첨부되었는데, 우리나라 最古의 지리지인 『三國史記』地理志와 조선초에 간행된 『高麗史』地理志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면서 史書의 부록이 아닌 독자적인 지리지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 건국 후 중앙집권체제 강화 노력과 함께 여러 문물제도가 정비되면서 통치상 지방실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慶尙道地理志』, 『新撰八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같은 지리지들이며, 성종대에 완성된 『東國輿地勝覽』은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조선 전기에 간행된 이들 관찬지리지들은 전국지리지였으므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또 중앙중심적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찬 전국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16세기에 들어 사림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지방 행정 단위인 부·목·군·현을 단위로 삼은 사찬읍지들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조선 전기 관찬지리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나, 지방 사림들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함에서 뛰어난 읍지를 많이 남길 수 있었다.

현전하는 16·17세기의 사찬읍지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상도 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sup>2)</sup> 경상도의 사찬읍지 편찬에는 주로

---

1) 조선전기의 관찬지리지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1·2)」, 『역사학보』 69·70, 역사학회, 1976.

이태진,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47, 1979.

이성무, 「한국의 관찬지리지」, 『규장각』 6, 서울대도서관, 1982.

정청수, 「조선조의 지리지에 나타난 사회설명의 원리 -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본 조선조 지식계층의 인식체계의 특질」, 『한국사회와 사상』, 한국정신문화원, 1984.

김동수, 「세종실록지리지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상태,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의 재검토」, 『芝村金甲周화갑기념 사학논총』, 1994.

退溪와 南冥의 문인이 중심이 되었다. 안동 지역에도 權紀가 편찬한 『永嘉誌』와 權是中이 편찬한 『宣城誌』가 전해 오고 있어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608년 편찬된 『永嘉誌』가 안동부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1619년 편찬된 『宣城誌』는 예안현 지역을 다루고 있다. 안동부 읍지의 명칭으로 사용된 永嘉가 안동의 別號인 것처럼, 宣城은 예안의 별호이다. 宣城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宣城誌』에 자세히 전해진다.

『宣城誌』에서 다루고 있는 예안현은 안동부가 안동시로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옛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예안현은 안동부의 속현이 아닌 독립된 영현으로 존재하면서, 조선성리학의 집성지로서 李賢輔·李滉·趙穆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鄒魯之鄉으로 불려졌다. 실학자 이중환은 『擇里志』에서 예안을 神이 알려준 복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sup>3)</sup> 그러나 일제시대 행정편의에 의한 강제적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sup>4)</sup> 예안은 안동의 일부가 되었다. 더우기 1970년대 안동댐의 건설로 예안현의 읍소재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수몰되어, 이제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금의 예안은 안동시 예안면이라는 행정명으로 남아 있을 뿐 鄒魯之鄉의 명성을 안동에 넘겨주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예안의 모습을 기록한 『宣城誌』도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에게조차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宣城誌』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사찬읍지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宣城誌』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2) 16·17세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편찬된 지리지로서 현전하고 있는 것은 함안군의 『咸州志』(1587), 안동부의 『永嘉誌』(1608), 동래부의 『東萊誌』(1611), 상주목의 『商山志』(1617), 선산부의 『一善誌』(1630), 진주목의 『晉陽志』(1630), 의성현의 『聞韶志』(1634), 단성현의 『丹城誌』(1640), 함양군의 『天巖誌』(1656), 경주부의 『東京雜記』(1669) 등이 있다.

3)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팔도총론』, 『택리지』, 한길사, 1992.

4) 1914년 읍면 통폐합에 따라 안동군에 편입되어 예안, 도산, 녹전 등 3개면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예안면은 의동면의 분천리, 동상면의 인계리 일부, 그리고 북선면의 외감애리, 동후면 나소곡리,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옛 예안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면이다. 그 관할 지역은 13개마을이었다.

5) 이 시기의 사찬읍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윤용혁, 「조선후기 공주읍지의 편찬과 공산지(1985) - 지방읍지의 연구」, 공주사범대논문집 19, 공주사대, 1981.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27호. 1983.

임세권, 「永嘉誌 편찬의 역사적 의의」, 『안동문화』 7, 1986.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조선시대 예안현의 모습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는 『宣城誌』를 통해서 예안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sup>6)</sup> 또한 『宣城誌』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편찬자인 권시중의 가계와 생애, 편찬 목적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宣城誌』의 체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宣城誌』 이전에 편찬된 지리지들의 체제를 살펴보고, 『宣城誌』와 다른 지리지를 비교하여 『宣城誌』의 체제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宣城誌』의 내용을 자연환경, 역사와 인물, 교육과 향촌사회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서 그 특징을 찾아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유승중, 「조선후기 공주지방의 읍지편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문중, 「17세기초 서산지방의 지리적 상황-호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4호 석천 이찬박사 고회기념 특집호, 1992.

김경수, 「鄭逯의 咸州誌 연구」, 『우강권태원정년논총-민족문화의 제문제』, 1994

최윤진, 「16·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17, 전북대사학회, 1994.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4집, 1997.

홍제연, 「16·17세기 서산지방의 사족동향 -호산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강창룡, 「16세기 사찬읍지의 연구 - 『함주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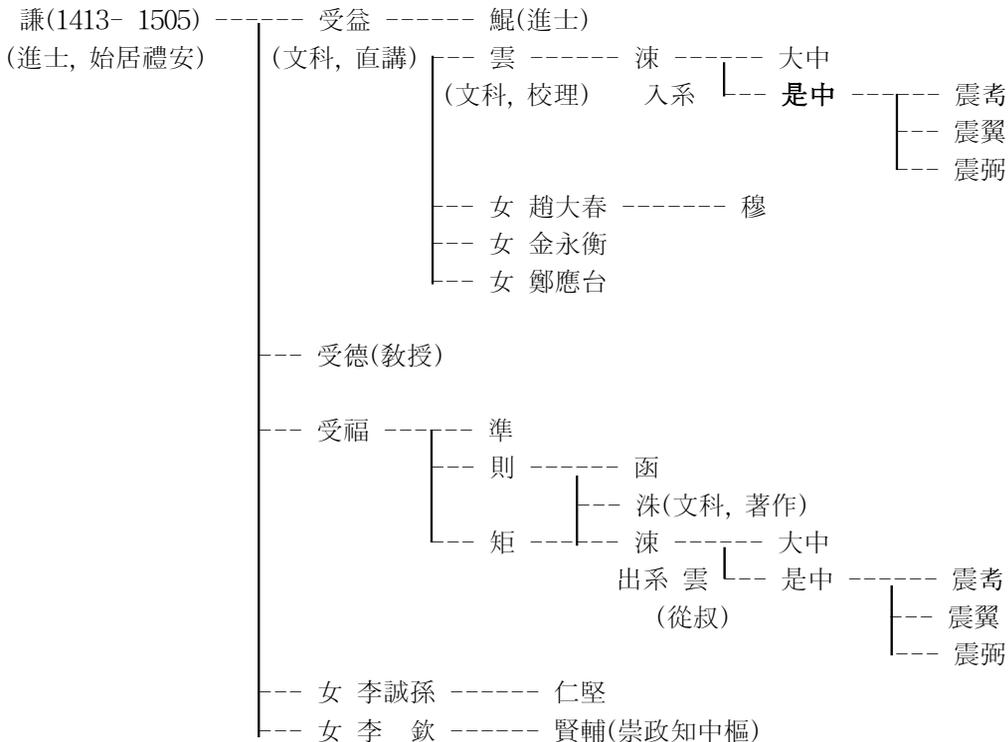
6) 국역 『宣城誌』 간행위원회에서 1993년에 간행한 『宣城誌』 초고본 영인본과 국역본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하 『宣城誌』라 칭한다.

## 제2장 『宣城誌』의 편찬자와 편찬 목적

### 1. 편찬자의 가계

『宣城誌』 초고 작성자인 권시중의 생애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것은 그가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벼슬길에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편찬한 『宣城誌』에는 많은 인물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입학 조인 권겸을 비롯한 그의 혈족들의 행적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이야기는 윤의정의 「養老囊說」을 빌려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생애는 족보, 일제 시대에 간행된 그의 遺稿 『櫟亭日稿』, 그리고 『宣城誌』에 소개되는 그의 혈족들의 행적과 『宣城誌』 속에 담긴 그의 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먼저 족보를 통해 그의 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권시중의 가계도



권시중의 혈족에 대한 소개는 『宣城誌』에 비교적 자세하다. 『宣城誌』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시중의 집안에서 예안에 최초로 자리잡은 사람은 권시중의 고조부 權謙이다.

권겸의 선조는 안동부 호장을 세습하다가 權闡이 대권문인 김방경의 妹壻가 되어 大府卿을 역임하자 비로소 사족이 되었으나 겨우 재지품관으로 존재하였다. 권겸이 당시 예안 토성에서 강력한 사족으로 성장한 예안김씨<sup>7)</sup> 小良의 사위가 되어 안동에서 처가를 따라 예안현 부라촌에 이주하면서부터 이 가문은 예안과가 되었다. 권겸에 대해서는 『宣城誌』의 「前朝寓居」와 「浮羅事蹟」에도 기록되어 있다.

권겸은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권겸의 맏아들인 受益은 성종17년(1486) 문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에 이르렀다. 권수익은 浮羅에서 태어나 月川으로 이거하였으므로, 『宣城誌』의 「月川事蹟」에 기록되어 있다. 권수익에게는 2남 3녀가 있었는데, 맏아들 鯤은 155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둘째 아들 雲은 1516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나 25세의 나이에 죽었으며, 「權校理實錄」과 「權校理傳」이 『宣城誌』에 실려 있다. 「권교리실록」에 따르면 權雲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종에 이르러 오촌질 涑으로 그의 뒤를 이으라는 유언하였는데, 涑은 바로 권시중의 부친이다.

권시중의 스승인 月川 趙穆(중종19년,1524 ~ 선조39년,1606)은 권수익의 외손이다. 권시중의 父인 涑이 권수익의 둘째 아들 雲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조목은 권시중과는 5촌간이 된다. 조목은 퇴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1552년에 생원시에 합격한 뒤로 과거를 그만 두고 은거하였으나, 추천으로 공조 참판에까지 이르렀다.

권겸의 둘째 아들 受德은 小科에 합격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권겸의 셋째 아들 受福은 성종20년(1489)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궁술이 매우 뛰어났다. 受福은 부라촌에서 면계촌으로 이사하여 시거하였으며, 『宣城誌』의 「浮羅事蹟」과 「綿溪事蹟」에 각각 기록되었다. 권수복의 맏아들 準은 사리에 밝아 향현을 맡았으며, 막내아들 矩는 학문과 문필이 모두 뛰어났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수

7) 金希寶(戶長) … 輅(郎將) → 小良(縣令) → 曾(文科, 校理) · 淡(文科, 吏曹判書) · 洪(通贊)으로 계승된 예안 김씨는 麗末鮮初에 사족화의 길을 걸으면서 각기 妻鄉을 따라 안동 · 英川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166쪽)

직으로 침지중추에 이르렀다. 權矩의 부인은 고려 때 명신 禹倬의 후손으로서 권시중의 가문은 丹陽 禹氏와도 혼반을 형성하게 되었다.<sup>8)</sup> 權矩의 맏아들 洵 역시 과거를 보지 않았으며, 월천과 함께 종조인 권수익에게 배웠다. 권수복의 손자 洙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著作에 이르렀으며 이황의 문하에서 배웠다.

권겸은 두명의 사위를 永川 李氏 가문에서 맞아들였다. 영천 이씨는 李軒이 영천에서 예안으로 이거하여 분천에서 자리잡은 이후 예안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龔巖 李賢輔(세조 13, 1467 ~ 명종 10, 1555)는 권겸의 외손으로 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효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현보는 영남사림과의 대가인 洪貴達에게 수학하였고 金安國·李彦迪·金緣·李堉·李濯·李滉 등과 師友관계에 있었다. 1498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외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영남지방의 문풍진작에 노력하였다. 강호가도로서 처사적 풍류를 즐기는 동시에 효제를 실천하고 養老·鄉飲·射禮와 향약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향촌사회에 보급시켰다. 이현보의 여섯아들은 모두 준수하여 영남의 수령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현보의 가문에서는 퇴계문도가 많이 나왔는데, 金富仁은 그의 사위이며 黃俊良은 그의 孫婿였다. 농암 이현보에 대해서는 『宣城誌』의 「本居人物」과 「汾川事蹟」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이현보가 지었다는 詩도 다수 소개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권시중의 가문은 예안에 입향한 후 3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예안현의 대표적인 사족인 永川 李氏·橫城 趙氏·丹陽 禹氏 등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예안의 유력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시중이 퇴계의 제자인 조목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점에서 퇴계 학맥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 2. 편찬자의 생애

『宣城誌』 편찬자 권시중(선조 5년, 1572 ~ 인조 22년, 1644)은 안동권씨의 예안 입향조인 권겸의 玄孫으로 자는 時正, 호는 櫟老·櫟亭·野舟子·葛仙老叟 등이다. 일찌기 퇴계의 제자인 월천 조목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

8) 단양 우씨는 우탁이 知三村에 우거한 이래 예안에 세거하였다.

다. 권시중의 遺稿에 수록된 동문록에는 琴憬·權春蘭·金澤龍·金圻·裴龍吉·琴濼·任屹·琴胤古·曹友仁·李準·鄭經世·金中淸·權宏·李山海·柳宗介·琴學古·申悅道·琴恪·趙壽朋·申達道·趙錫朋 같은 이름들이 발견된다. 이들 명단을 보면 현달한 인물이 많은데, 일제 시대에 간행된 석판본 『宣城邑誌』<sup>9)</sup> 人物條에 이들 중 다수의 이름이 실려 있다. 또한 훗날 복인 정권에 가담한 李山海 같은 인물도 섞여 있어서, 이 동문록은 권시중의 초년에 월천문하에서 수행하던 당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호 櫟老는 퇴계 선생의 5언 절구 가운데 ‘櫟遷’<sup>10)</sup>이란 시에서 따 온 것으로 그가 퇴계 학맥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권시중의 생존시기는 조선 시대에서 가장 극심한 혼란기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며, 사림이 4대 土禍를 딛고 정계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래 사림들 내부의 분열로 당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光海君의 亂政과 仁祖反正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권시중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족보의 권시중 행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학문과 효행으로 인하여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나 광해군 난정을 만나 벼슬에 뜻을 끊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梅園 金光繼·琴易 裴龍吉·晦谷 權春蘭 등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하였으며, 『宣城誌』와 『善谷蓮桂錄』을 지었다”<sup>11)</sup>

윗 글에서 권시중이 ‘광해군 난정을 만나 벼슬에 뜻을 끊었다’함은 그의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점은 결코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았던 퇴계와 월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퇴계와 월천으로 이어지는 그의 학맥이 광해군 집권시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에 속해 벼슬길에 오르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9) 이하 『宣城邑誌』라 칭함.

10) “綠崖路呼遷/ 其上多樹櫟/ 何妨抱離奇 / 壽已過數百” 기슭타고 난 길을 천이라 하는데/ 그 위에 상수리 나무 많기도 하여라/ 굽고 뒤틀린 저 모양 무엇이 해로우리 / 이미 그 나이 수백년도 넘겠는 걸.(『퇴계집』 권3)

11) “孝學薦除參奉光海政亂杜門自請與金梅園光繼裴琴易龍吉權晦谷春蘭酬見志著宣城誌善谷蓮桂錄”(『安東權氏大同譜』 券三 中允公派, 103쪽)

권시중과 뜻을 함께 하고 학문을 토론하였다고 하는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梅園 金光繼는 예안의 대표사족이라 할 수 있는 光山 金氏인 垓의 아들이다. 金光繼는 鄭述, 張顯光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났다. 그러나 정치가 혼란해지자 문을 닫고 세상을 피해 살았다. 仁祖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병자호란에 향인이 추대하여 의병장이 되었으나 남한산성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고 돌아가 숨어서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 金光繼와의 학문적 교류는 『宣城誌』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金光繼의 스승인 鄭述는 16세기 이후 우리 나라 사찬읍지의 편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최초의 사찬 읍지인 『咸州誌』의 편찬자이기도 한 鄭述는 『永嘉誌』 편찬 당시 안동부사로서,<sup>12)</sup> 『永嘉誌』의 간행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鄭述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곳마다 각 지방의 사립들과 함께 사찬 읍지를 편찬하였다.<sup>13)</sup>

琴易 裴龍吉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金光繼의 父 金垓 휘하에서 부장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또 晦谷 權春蘭은 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이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金允明의 휘하에서 활동했으며, 1604년 홍문관 수찬을 지낸 후 여러 관직이 내려졌으나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고 학문을 닦으며 여생을 보낸 인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권시중과 학문적 교류를 한 세 사람 모두 의병활동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宣城誌』의 「월천선생실록」에 “조월천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梅巖 李叔樑과 항병을 일으키는 문제를 상의하고, 생원 金응훈으로 都統을 삼고, 한림 김해를 副統으로 삼았으며, 金圻 및 저작랑 金澤龍을 整齊將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미루어 월천의 제자였던 권시중의 의병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시중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효성’이다. 선조 35년에 문학과 효행으로 참봉에 추천되었을 정도였다. 그의 효행을 기린 ‘養老囊說’<sup>14)</sup>은

12) 재임기간은 1607년 ~1608년.

13) 鄭述는 『咸州誌』 외에 경상도의 『昌山志』, 전라도의 『同福誌』, 강원도의 『臨瀛志』, 『通川志』 등의 편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咸州誌』 외에는 현전하지 않고 있다.

14) 권시중은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축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곳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먼저 드렸는데 고을 사람들이 그 가축 주머니를 ‘養老囊’이라 불렀다.

任屹과 尹義貞 등 고을 사람들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宣城誌』에 수록되어 있다. 『宣城誌』에 수록된 任屹의 「養老囊說」과 尹義貞의 「跋 養老囊說」을 통해 그의 효행의 내용은 물론 권시중의 가세도 짐작할 수 있다.<sup>15)</sup> 권시중의 집안은 예안 지역 대표적인 사대부 가문이기에는 하였으나 사대부로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宣城邑誌』 인물조·과거조·생진조를 분석해 보면 권시중 이후 권씨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sup>16)</sup> 이것은 예안지역의 유력가문이었던 권씨 문중이 쇠락해 간 증거로 볼 수 있다. 『宣城誌』에서 안동 권씨 문중의 비중이 큰 것은 쇠락해 가는 가문의 위세를 현양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3. 편찬 목적

『宣城誌』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여타 읍지의 경우 서문에 그 편찬의도를 밝히는 것이 통상의 사례이다. 그러나 『宣城誌』의 서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山川·疆域·坊里·風俗·沿革·姓氏·人物 등 예안지역을 개관하고 있다. 16~17세기에 편찬된 읍지들과 비교해 볼 때,<sup>17)</sup> 『宣城誌』의 편찬 목적은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란이전에 쓰여진 『延安邑誌』(1581)<sup>18)</sup>나 『威州誌』(1587)<sup>19)</sup>의 경우처럼

15) “...집이 매우 가난하여 죽조차 잊지를 못하였고 직접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나무를 하여 방을 따뜻하게 하여 그 어머니가 춥고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그 수고함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선성지』, 任屹, 養老囊說)

“...집은 바람을 막지 못하고 식량은 그릇에 차지 아니하여 집에는 심부름할 아이가 없으며 밥을 하려 하여도 종조차 없었다...” (『선성지』, 尹義貞, 跋 養老囊說)

16) 人物條에는 權定·權受福·權雲·權洙·權是中, 科擧條에는 權受益·權雲·權洙, 生進條에는 權受益·權鯤·權雲·權洙 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권시중보다 앞선 인물이다.

17)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88~96쪽.

18) “촌거가 조밀해지고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니 寸土에 대한 쟁송이 있게 되고 상인들은 도로를 따라 나오게 되어 欺謾의 風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豪民들이 송사하기를 좋아하며, 교활한 향리들이 법을 농락하고 전제가 문란하며 부역은 공평하지 않아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變詐가 온갖 형상을 이루고 있어 政令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어렵다. 읍인 진사 陸孝範이 읍지를 만들에 많은 자료를 모으고 세세한 사실까지 수집하여 상세하고 완전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一邑의 풍토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지년간 알들의 득실을 얻을 수 있어서 …… 따라서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그 情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적 문란에 대한 시정과 수령의 읍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자료로 『宣城誌』가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宣城誌』의 「禮安實錄」에 “그러나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문운이 소진하고 사습은 옛같지 않으며 고을의 법도는 크게 어그러졌고, 풍속은 점차 각박해지니 지난 일을 회고함에 참으로 탄식할 만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읍지 편찬의 배경이 된 당시 예안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宣城誌』의 「歷官錄敍」에서는 권시중이 수령들의 읍치에 도움을 주고자 읍지를 편찬하였을 것이라 짐작되는 내용이 발견된다.<sup>20)</sup> 「歷官錄」에는 고려말부터 당대까지의 역대 수령들의 성명, 부임·이임 년월, 체직의 사유 및 업적까지 적어 놓고 있다. 이는 후세의 수령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에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임란을 경과하면서 무너진 사회 질서의 복구와 안정을 위하여 『宣城誌』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 예를 1617년 이준이 편찬한 『商山志』<sup>21)</sup>와 임란직후인 1600년 吳澐이 재간한 『咸州誌』<sup>22)</sup>에서 찾을 수 있다. 임란으로 파괴된 향촌 질서를 재지사족층이 중심이 되어 회복함으로써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읍지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實에 어긋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이 曉諭하는 바에 쉽게 따르게 되며 날마다 자신도 모르게 善에 나아가게 되어 수고는 옛보다 반으로 줄어드나 효험은 반드시 배가 될 것이나 읍지 편찬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연안읍지』 尹斗壽 舊誌序)

19) “풍속의 해이해짐이 비록 풍토가 오래된 데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교화가 근본이 없고 禮讓이 흥기하지 않으며 오직 법령과 繩律만이 엄하게 되면 비록 淳質한 선비로 담당하게 해도 능히 스스로 밝히게 할 수 없다.”(『咸州誌』, 鄭求序)

20) “성주께서 말하기를 ‘우리 예안 고을은 곧 仁賢의 고을 인데 『先生案』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오. 그대가 고금의 일을 훤히 안다고 하니 『先生案』을 엮어서 이 사람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시오’ 라고 하였다. ... 보잘 것 없는 나는 일찍이 옛 일을 모으는데 큰 취미가 있었으니 하물며 성주의 명을 받아서 평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음에랴.”(『宣城誌』 歷官錄敍)

21) “우리나라의 전부와 토공은 일정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병란을 겪고난 후부터 版籍이 모두 불타 버려서 九賦九貢의 법을 상고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 경계를 바로하고 공부를 균등히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급선무인데, 고식적으로 대처하여 개혁을 하지 않으니 識者들의 恨이 된다.”(『商山志』, 貢賦)

22) “하물며 세가사족으로서 문물이 풍부하고 운택한 자들은 한번 兵禍를 겪음에 그 화가 松楸, 窈銘幽碣에까지 미쳐서 보완된 것이 거의 없다. 후예들이 先世의 일을 알고자 해도 막연히 찾을 바가 없는데 홀로 이 『함주지』가 남아 이를 의존할 수 있다.”(『咸州誌』, 吳澐跋)

퇴계 이황이 세운 「鄉射堂 約條」와 퇴계의 문인 琴蘭秀의 「禁斷土豪侵占匠人規書送留鄉所書」를 『宣城誌』에 담고 있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권시중은 자신을 비롯한 재지세력들의 위세를 현양할 목적으로 『宣城誌』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예는 『晉陽志』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晉陽志』의 姓氏條에는 河氏와 權氏 등 특정가문의 족보와 世系에 관련된 글을 실고 있는데, 이는 원래 이 책의 구성을 발의한 河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지사족들이 주관하여 편찬하는 읍지들 가운데는 지방세력가들의 위세를 현양하려는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다.

『宣城誌』의 내용에서 편찬자 권시중 가문의 비중이 큰 것이나, 자신의 스승인 趙穆에 관한 기록, 조목의 스승인 이황에 대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편찬 의도가 내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스승이었던 조목에 대해서는 「월천 선생실록」을 통해 기록이 필요치 않는 사소한 언행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宣城誌』 전체를 통하여 월천의 글이 6편, 시가 9수나 소개되고 있으며, 서문과 예안실록을 비롯하여 山川이나 各名 등에 10차례 이상 월천이 언급되고 있다. 퇴계 이황에 대해서도 退陶 李先生, 退溪 先生 등으로 20여차례나 언급되고 있으며, 퇴계의 글이 2편, 시가 4수가 실려있다.

넷째, 권시중은 예안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에서 『宣城誌』를 편찬하였으며, 『승람』의 소략함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 『永嘉誌』(1608)를 들 수 있다. 『永嘉誌』의 편찬동기는 임란으로 말미암아 붕괴된 촌락 질서의 복구 및 안동이 사림들의 연원이라는 성리학적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승람』의 소략함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承平志』, 『平壤志』, 『成川志』, 『東京雜記』 등도 『승람』의 소략함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된 읍지들이다.

『宣城誌』의 경우 『승람』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 ‘新增’이라하여 간략한 내용을 보충하여 넣고 있다. 뒷부분의 各里 事蹟을 제외하면 『宣城誌』는 『승람』을 간략함을 보충하는 체제인 것이다. 『宣城誌』 古跡條의 ‘宜仁廢縣’에 대한 기사<sup>24)</sup>와 ‘淸涼山’에 대한 기사<sup>25)</sup>는 『승람』에 대한 권시중의 인식을 잘 보

23) “우리 안동부의 산천의 뛰어난, 인물의 훌륭한, 토산의 풍부함, 풍속의 아름다움 및 기이한 자취가 『승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백중에 하나, 둘에 불과 하다. 그 나머지는 옛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사라져 짐볼한 것이 몇 천만이 되는지 알 수 없다.”(『永嘉誌』, 權紀序)

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宣城誌』는 孝·悌·忠·烈 등 교화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天嶺誌』에 잘 나타난다. 『天嶺誌』의 편찬자 鄭光淵은 序文에서 병자·정묘 호란 후 풍기가 寢簿·陵夷해가는 사회현실을 보고 孝·悌·忠·烈 사상을 고취하고자 읍지를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성리학적인 윤리관에 의거하여 변모하여가는 향촌 질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읍지 편찬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天嶺誌』의 체제는 戶口·軍丁·土産·徭役·道路·堤堰 등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외되고 人物·學校에 관한 항목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외되고 문화적인 면이 강조된 구성체제는 『宣城誌』와 유사하다. 『宣城誌』의 인물관련 항목에는 150여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들의 충·효와 관련된 덕목들이 강조되고 있다.

- 
- 24) “승람을 살펴보면 이 일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단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고 있다. 남쪽에는 토성이 있고 북쪽에는 향교터가 있었다. 의인현 및 대사는 만력 계미년(1583)과 갑신연간(1584)까지도 모두 있었으니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자세한 사실을 다하지 못한 것인 듯하다.”(『宣城誌』, 古跡)
- 25) “신라왕이 왜란을 피하여 이곳에 숨었다. 육조를 차례로 산속에 설치해 두어 각기 그 명칭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말에 자세하게 전한다, 그러나 승람을 살펴보면 상세하지 못하여 어느 임금때인지를 알 수 없다.”(『宣城誌』, 古跡)

## 제3장 『宣城誌』의 체제

### 1. 『宣城誌』 이전에 발간된 지리지의 체제

조선시대 지리지 가운데 最古本人 『慶尙道地理志』(세종 7년, 1425)는 『新撰八道地理志』(세종 14년, 1432)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으로서 경상도에 대한 조선시대 최초의 지리지이다. 그후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단종2년, 1454)는 『新撰八道地理志』를 저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변동사항만을 말미에 덧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상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세종실록지리지』는 같은 계열의 지리지로서 체제와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하다.

『경상도지리지』편찬 후 40여년이 지난 예종 元年(1469)에 이르러 『경상도지리지』의 간략함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 때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동기에 대해서는 시세와 연혁의 변동 때문에 세종대 이후의 간략함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慶尙道續選地理誌』는 『경상도지리지』의 단순한 增補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 『慶尙道續選地理誌』에는 『경상도지리지』에 수록되었던 戶口·田結·土地肥瘠·風俗·土宜·軍丁 등의 편목이 탈락되고 名賢·土姓·守令·旌閭·陵寢·樓台·題詠·僧寺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 이러한 추세는 『東國輿地勝覽』에 이르러 더욱 확대된다. 『慶尙道續選地理誌』는 『팔도지리지』편찬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며, 『동국여지승람』은 『팔도지리지』에 『東文選』의 시문을 첨가한 것이다.

徐巨正 등에 의하여 일차 選進된 『동국여지승람』의 편목을 서문을 통해 살펴보면, 沿革·風俗·形勝·名山·大川·高城·大砦·廟社·宮室·五部·坊里·司職·陵寢·祠壇·學校·旌門·寺刹·土産·貢賦·倉庫·樓台·院宇·關防·驛站·人物·題詠 등이다. 성종 12년(1481)에 選進된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7년(1486)에 金宗直 등이 1차 수정을 가하고, 연산군 5년(1499)에 任士洪에 의하여 2차 수정이 있는 후, 중종 26년(1531)에 李荇 등이 다시 증보하여 신증함으로써 몇 차례의 침식을 거쳐 현전하는 『新增東國輿地勝覽』<sup>26)</sup>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대표적 지리지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와 『勝覽』의 항목 가운데 서로 다른 항목만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세종실록』지

26) 이하 『勝覽』이라 칭한다.

리지는 지방행정의 파악에 유리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호구·田結·土地肥瘠·土宜·土貢·조세수납 등 경제적인 면, 郡縣離合·鄉所部曲·越境處 등 행정적인 면, 성곽·險阻·봉수·軍丁·鎭·營 등 군사적인 면 등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勝覽』은 人物·禮俗·詩文 등의 항목이 보장된 대신 실제 지방 통치에 필요한 내용이 소략해지고 특히 經濟·軍事·行政 관계의 내용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를 통해서<sup>27)</sup>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즉 왕조 개창 후의 지방통치는 새로운 정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유교적 윤리 체계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또 넓혀 가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勝覽』은 조선 후기 수 많은 읍지들의 모범이 되어 지리지 체제의 모형으로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항목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표적인 사항만을 기록할 뿐이어서 전국 지리지가 지니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표 2>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항목 비교

서명 분류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행정관계	官職, 所領, 越境處, 鄉所部曲, 海島	郡名
경제·재정 관계	貢稅, 賦稅, 戶口, 墾田, 土貢, 藥材, 堤堰, 魚梁, 鹽稅, 磁器所, 陶器所, 土地肥瘠	倉庫
군사관계	牧場, 鎭(軍官, 守城軍), 軍丁, 水營(兵船, 船軍), 木柵, 險阻要害	關防
사회·인물 예속 관계	行祭所, 靈異	學校, 宮室, 古跡, 題詠, 院宇, 名宦, 寓居, 孝子, 烈女
자연환경 관계	溫泉, 風穴, 氷穴, 土質, 土宜	形勝

27)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태진은 『勝覽』이 중국의 지리지인 『方輿勝覽』과 『大明一統志』의 체제를 모방한 때문이며, 『勝覽』이 당시 사회의 土地貢法 체계의 문란과 해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정된 왕조와 왕권의 위세를 과시하며 중앙관계에 진출한 집권층들이 人物條를 통해 명족의식을 고양하려 하는데 강조가 두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이태진,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46·47, 1979)

또한 양보경은 중국에서는 조선초기부터 仁祖代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신이 왕래하면서, 조선의 실정과 산물의 파악을 위하여 지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특히 貢物·戶口·田結·토지비척·陶磁器產地 등이 자세히 적힌 『東國地誌』만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조공관계와 관련이 되는 문제였으므로 『勝覽』의 내용비중이 변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조공관계에서 오는 현실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리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다고 설명한다. (양보경, 앞의 논문, 1987, 79쪽)

16세기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주관하에 실시되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외에 각 군현을 단위로 하는 개별 읍지들이 편찬되었는데, 각 지방에서 지방 사림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사찬의 성격이 강해졌다. 현지에 거주하는 지방 사림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이들 읍지들은 편찬자의 개성과 목적이 크게 반영되어 이전의 관찬지리지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지님으로써 오늘날 높은 사료적 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편찬연대를 알 수 있는 사찬읍지로서 『宣城誌』 이전에 편찬된 읍지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宣城誌』 이전에 편찬된 사찬읍지

道	書名	地域	編纂時期	編纂者	備考
慶尙道	聞韶志	義城	1507	李耔	不傳
	昌山志	昌寧	1581	鄭述	不傳
	咸州誌	咸安	1587	鄭述	1600년 吳滢이 再刊
	永嘉誌	安東	1608	權紀	柳成龍·鄭述  관여 1791년 金宏이 重刊 1899년 權相鶴이 重刊
	東萊誌	東萊	1611	成晉善	1680년 李瑞雨가 葺山後誌를 撰했으나 不傳 1740년 朴師昌의 東萊府誌  전함
	尙山志	尙山(尙州)	1617	李垞	
全羅道	昇平志	順天	1618	李晬光	1729년 洪重微 重刊
忠淸道	湖山錄	瑞山	1619	韓汝賢	
黃海道	延安邑誌	延安	1581	尹斗壽	1691년 崔錫鼎 重刊  청주
平安道	平壤志	平壤	1590	尹斗壽	1730년 송인명 『平壤續誌』 편찬 1837년, 1855년 重刊
	成川志	成川	1603	李尙毅	1656년 李東老 『成川續誌』 편찬 1842년 徐載淳 重刊
咸鏡道	北關誌	鏡城·吉州· 明川·富寧· 會寧·茂山· 鐘城·穩城· 慶源	1617	李植	1663년 李端夏  완성 1693년 申汝哲·李三碩  증보 1782년 申大謙  간행

이들 군현 단위의 읍지들이 상호간에 연관성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식이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읍지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항목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읍지들은

기본적인 체제를 『승람』에 두고 40여가지 내외의 항목을 설정한 후 그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밖에 서문과 지도를 첨가하거나 책의 끝에 작성의 의의와 목적·과정을 밝히는 발문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표 4> 읍지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항목<sup>28)</sup>

서명 분류	읍지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항목	일부 읍지에 수록되는 항목
자연지리	山川, 形勝, 島嶼	林藪, 溫泉, 嶺峴
역사·문화·사회	* 建置沿革, 郡名, 疆界(程道) * 陵寢(園陵), 冢墓, 風俗, 古跡, 樓亭, 學校(校院), 寺刹(佛宇), 壇廟, 公廡, 碑版(冊版), 古事, 題詠(時文) * 姓氏, 人物, 忠臣, 孝子, 孝女, 烈女, 名宦, 科宦, 隱逸, 學行, 流寓, 行誼, 生存, 先生案(宦蹟)	邑治, 分野, 胎封, 御製御筆, 教坊
경제	* 戶口, 結總(旱田, 水田), 租稅(田稅, 大同, 均勢, 商稅, 船稅, 鹽稅), 場市, 土產, 堤堰, 倉庫, 徭役, 還穀(社還), 俸廩 * 驛院, 烽燧, 撥站(擺撥), 道路, 橋梁, 津渡	進貢(進上), 邑事例
정치·행정·군사	* 官職(官員, 職役), 坊里, 城郭, 鎮管, 鎮堡, 軍額(軍摠), 軍器, 關陘(關防), 牧場 ※ 驛院, 烽燧, 道路, 撥站, 橋梁, 渡津, 嶺峴, 建置沿革, 郡名, 疆界, 公廡 條도 관련됨	賤安, 土官, 兵船

## 2. 『宣城誌』의 체제상 특징

『宣城誌』는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이 책의 서두 부분이 한 두장 떨어진 관계로 원래는 그 보다 많은 분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사된 서체는 비교적 해서로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행서로 씌어 있다. 또한 이 책이 초고본인 관계로 목차나 체제가 지리서나 역사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문집이나 한 지역의 종합적인 기록물로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후세에 판단되는 자료까지 꼼꼼히 기록한 점에서 볼 때 아주 충실한 편이다.

『宣城誌』의 序文에서 권시중은 “萬曆 己未(1619, 광해군11) 淸和之望 櫟老 書”라고 작자와 연대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예안의 역사를 개관한 「예안실록」이 있

28)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4집, 1997, 213쪽.

고, 境界·建置沿革·官員·祠堂·郡名·姓氏·風俗·古跡·形勝·山川·土產·城郭·烽燧·樓亭·學校·書院·鄉射堂 約條·約條·匠店·掌面·橋梁·驛院·佛宇·寓居·始居·人物·墓所齋舍·各里事蹟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宣城誌』의 구성체제를 『승람』의 예안현 조와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승람』의 예안현 조와 『宣城誌』 항목 비교

서명 분류	『신증동국여지승람』 예안현 조	『宣城誌』
자연지리	* 山川	* 形勝, 山川
역사·문화 · 사회	* 疆界, 建置沿革, 郡名 * 風俗, 樓亭, 學校, 佛宇, 社廟, 古跡, 題詠 * 姓氏, 名宦, 寓居, 孝子	* 界限(疆界), 建置沿革, 郡名 * 風俗, 樓亭, 學校, 書院, 鄉射堂 約條, 佛宇, 廢刹, 生祠堂, 社廟, 古跡, 題詠, 名賢軒號, 墓所齋舍, 各里 事蹟 * 姓氏, 名宦, 歷官, 寓居, 始居, 人物, 旌門(孝子), 先進, 南行
경제	* 土產	* 土產, 匠店結卜數
정치·행정 · 군사	* 城郭, 烽燧, 驛院	* 掌面 * 城郭, 驛院, 烽燧, 橋梁

『宣城誌』는 경제, 행정,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세종실록』 지리지보다는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승람』의 체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宣城誌』는 疆界·建置沿革·郡名·姓氏·風俗·山川·土產·城郭·烽燧·樓亭·學校·驛院·佛宇·社廟·古跡·名宦·寓居·孝子·題詠의 순으로 되어 있는 『승람』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면서 『승람』의 내용을 인용하고 ‘新增’이라 하여 새로 증보된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추가된 항목에서는 좀 더 지역적인 관점이 부각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사족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안현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승람』에 비해 『宣城誌』는 앞부분에서는 주로 예안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각 마을 별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술되고 있는 마을은 掌面に 실려있는 7개 행정구역 47개 마을 가운데 汾川·溫溪·浮羅·北溪·鈍谷·檀野·寒谷·知三村·萬里村·綿溪村·南溟村·烏川·沙川·月川 등 14개이다.

그 가운데 溫溪의 경우 마을의 위치·산천·연혁을 알 수 있는 事蹟과 堂亭各名·風俗·姓氏·登科·司馬·南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邑誌 속에 포함된 마을誌의 형식을 띤다. 그 외 각 마을의 소개 형식은 마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事蹟, 各名, 人物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인물에 관해서는 그 인물과 관계되는 詩와 文을 함께 실었다. 鈍谷·萬里村·南溟村의 경우에는 간단한 事蹟만 소개될 뿐이다.<sup>29)</sup> 이것은 유력사족이 세거하는 마을에 비중을 높이 둔 까닭인 듯 하며, 각리 사적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은 紙匠里의 紙匠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족으로서 권시중의 씨족·사족 중심의 지역관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宣城誌』의 항목을 현전하는 最古의 사찬읍지인 『咸州誌』 그리고 17세기의 대표적인 사찬읍지인 『永嘉誌』와 항목을 비교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咸州誌』, 『永嘉誌』와 『宣城誌』의 항목 비교

	『咸州誌』(1587)	『永嘉誌』(1608)	『宣城誌』(1619)
자연지리	形勝, 山川	形勝, 山川, 池塘, 林藪,	形勝, 山川(十四曲勝處, 日洞錄 付)
역사·문화·사회	京師相距, 四隣疆域, 建置沿革, 郡名, 館宇壇廟, 學校, 亭榭, 佛宇, 古跡, 任官, 名宦, 姓氏, 人物, 寓居, 流配, 善行, 閨行, 見行, 文科, 武科, 司馬, 冢墓, 旌表, 冊版, 題詠, 叢談, 佔畢齊行蹟	京師相距, 四隣疆域, 沿革, 邑號, 各縣沿革, 疆域, 風俗, 館宇, 樓亭, 鄉校, 壇廟, 書堂, 書院, 鄉射堂(伏號上訴, 乙巳水災, 戊申蟲災 付) 古跡, 佛宇, 古塔, 名宦, 任官, 姓氏, 見行, 孝子, 烈婦, 冢墓, 叢談	禮安實錄, 界限, 郡名, 樓亭, 學校, 書院(奉安文, 恒用祝文, 埋誌石告文, 文集告成文, 刻天淵臺告文, 附宗廟錄, 鄉射堂約條, 約條, 禁斷土豪侵占匠人規書送留鄉所書 付), 佛宇(廢刹 付), 祠廟, 古跡. 歷官(名宦, 歷官錄敍 付), 題詠, 寓居, 旌門(孝子), 名賢軒號, 墓所齋舍, 始居, 人物, 各里 事蹟, 先進, 南行
경제	戶口, 田結, 土產, 堤堰, 灌溉, 橋梁	戶口(田結, 軍額, 奴婢 付), 土品, 土產, 堤堰, 灌溉, 津渡, 橋梁, 匠店	土產, 匠店結卜數
정치·행정·군사	各里 城郭, 驛院, 軍器, 烽燧,	界首官所屬, 官員, 各里, 鎮營, 軍器, 城郭, 烽燧, 驛院,	官員(名宦, 生祠堂 付), 掌面(嶺峴, 勝處 付) 城郭, 烽燧, 驛院

29) 주로 山川과 始居에 관한 내용이다.

『威州誌』와 『永嘉誌』는 수령으로 부임했던 정구가 편찬에 간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威州誌』는 『승람』에 비해 새로운 항목이 많이 첨가되었는데 이중에서도 各里, 戶口, 田結, 軍器, 堤堰, 灌溉 등의 항목이 추가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 항목들이 수령이 安民俗善의 정치를 펴는데 요체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sup>30)</sup> 『永嘉誌』는 작성체제나 목록설정 등을 살펴볼 때 『威州誌』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永嘉誌』는 『威州誌』보다 더욱 항목을 세분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며 池漘, 林藪, 津渡, 匠店, 古塔 등의 항목이 새로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항목의 추가는 안동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령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威州誌』나 『永嘉誌』는 읍지에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한 반면 『宣城誌』는 재지사족이 직접 편찬하였으므로, 교화적인 측면과 사족활동과 관련한 자료가 더 풍부하게 실려있다. 또한 『宣城誌』는 양 읍지에 비해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항목의 중복이 심하다. 예를 들어 예안의 연혁은 序·建置沿革·郡名·古跡·知郡史·歷官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30) 양보경, 「경상도 읍지 편찬의 추이」, 『전국지리지총서:경상도읍지』, 아세아문화사, 1982

## 제4장 『宣城誌』의 내용

###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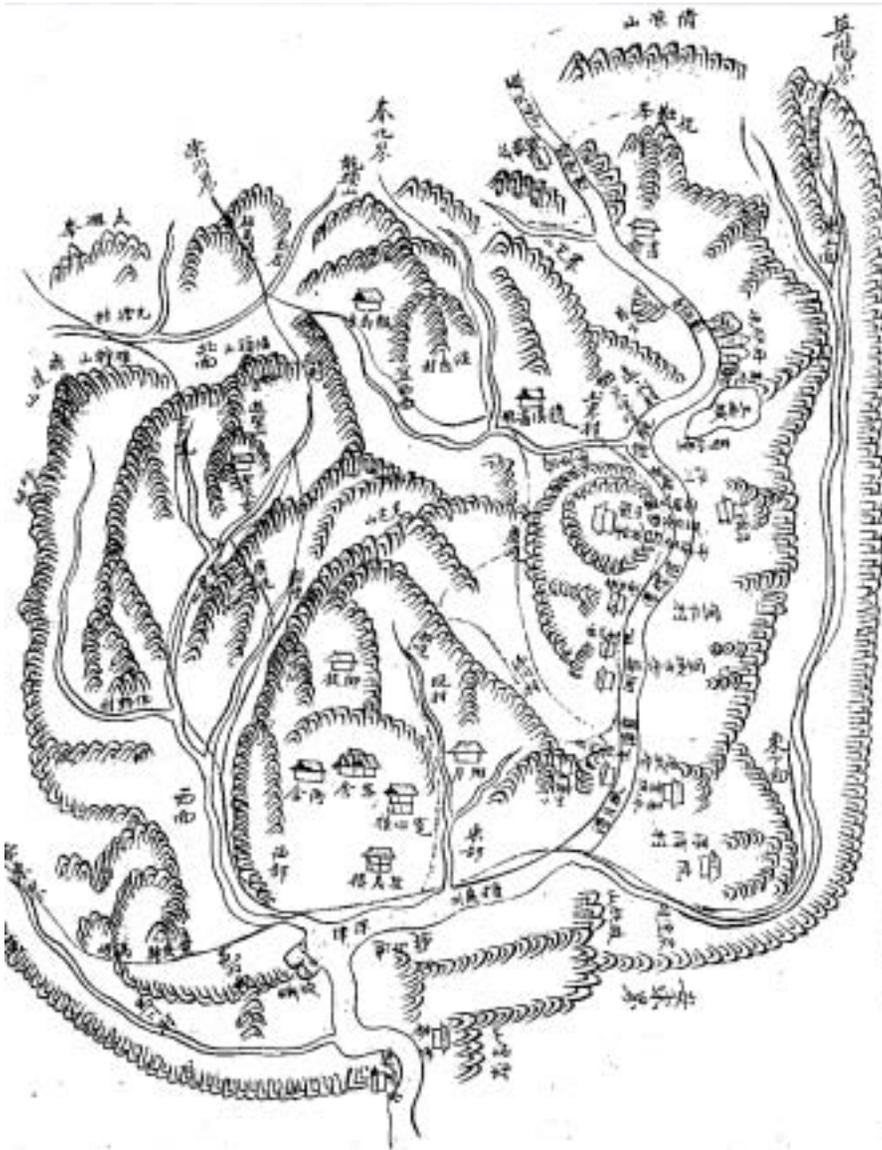
『宣城誌』에서 예안현의 자연환경을 살필 수 있는 항목은 山川·形勝 외에 序·예안실록·禮安縣界限 등이다. 그 외에 各里 事蹟에서도 各里의 자연환경을 살필 수 있다. 『宣城誌』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宣城誌』의 자연환경 관련 부분을 검토하면 권시중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족들의 유교적인 자연관이 발견된다. 유교적 자연관에 의하면 자연 현상은 그저 자연의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의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자연을 자연현상으로 보고 그 속에 내재하는 법칙성을 찾아보려던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울 속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 태도는 유교의 윤리체계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읍지에서 자연환경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山川條는 일반적으로 山·川·峴·澤·津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기록하고 있다. 읍지들 중에는 산천조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어서 산천의 來脈往去와 같은 자연현상을 파악한 기록도 있으나, 인물에 관련된 고적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왕의 사적이나, 충신, 효자, 열녀, 그 지방 명사에 관한 전설이나 자취를 기록하였다. 『宣城誌』 산천조의 내용도 일반적인 읍지들과 비슷하다. 『승람』의 山川條에 실린 城隍山·祿轉山·邀聖山·長葛峴·靈芝山·龍頭山·造山藪·羅火石川·率良川·浮津 등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新增하여 太祖峯·攀芝山·芙蓉山·魚吞山·高通山·葆眞山·奉先山·澗陰山·芝嶺山·蟻山·飛鳳山·祝融峯 등의 위치와 전설, 지역명사들의 자취를 기록하고 관계된 詩를 첨가하고 있다. 山川條의 뒷부분에는 14曲勝處로 博石川·景巖潭·孤山·日洞精舍·月明潭·霹靂巖·白雲地·丹砂峽·川沙·月瀾臺·汾陽·帶羅·鼻巖·烏川·魚吞을 들고 있다. 14곡 승처는 대부분이 퇴계선생의 시가 있거나 금난수·이현보·조목 등 예안의 대표적인 士族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편찬자 권시중의

유교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을 그 자체로서 보다는 인간의 생활무대로서의 역할과 그 결과로서의 흔적에 대해 더욱 가치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조선시대의 예안현 -해동지도31)-



31) 해동지도 권1, 서울대학교규장각

둘째, 『宣城誌』의 자연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당시의 사족들이 중시하고 있던 자연환경은 ‘地勢’에 관련된 내용임이 발견된다. 『宣城誌』에서는 인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 요소 가운데 기후나 토양, 식생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實錄』에 따르면 예안현에는 지진이나, 홍수, 우박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宣城誌』에서는 各里 事蹟條에 홍수가 언급될 뿐이다.<sup>33)</sup> 또한 지형적인 내용도 자연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군사·문화·농업의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이다.

셋째, 『宣城誌』의 자연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인물의 출생을 地氣·風水와 연관 되는 것으로 보는 풍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 우선생 탁이 예안향의 남쪽 ‘지삼마을’로 물러나서 이로부터 弘儒 碩士들이 꼬리를 물고 배출되었으니 ‘人傑이 地靈을 따른다’라는 말이 어찌 그렇지 않단 말인가”<sup>34)</sup>

“퇴계 선생과 같은 어진이가 태어난 것이 예안 고을 산수가 인현 한 분을 태어나게 도와 준다 할수 있겠으며...”<sup>35)</sup>

“어탄산은 현 남쪽 5리에 있는데 읍을 막아주는 문이며 水口이기도 하다.”<sup>36)</sup>

“중이 살만한 터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에 살면 분명히 귀한 후손을 낳으리

32) 권시중 생존연간에 중앙에 보고된 자연재해로는 우박(선조 29년 6월 戊申條), 지진(선조 33년 9월 癸卯條), 홍수(선조 38년 7월 癸酉條), 우박(광해군 11년 5월 丙戌條) 등이 있는데, 특히 선조 38년의 홍수는 유래에 없는 대홍수로 잔파된 상황이 壬辰年 賊火에 분탕질당했을 때 보다 심했다고 적고 있다.

33) “가정 정미년(1547) 및 만력 계미년(1583)에 물난리를 만났다. ……나중에 을사년 큰 물난리를 만나서 온 들판이 모두 물에 잠기어 토지가 모래밭으로 변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 이 마을이 완전히 물난리를 만났으니 그 당시의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宣城誌』, 綿溪事蹟)

34) 『宣城誌』, 序.

35) 『宣城誌』, 禮安實錄.

36) 『宣城誌』, 山川條.

라’ 하였다.”<sup>37)</sup>

## 2. 역사와 인물

『宣城誌』에서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 항목을 든다면 建置沿革·郡名·古跡·佛宇·名宦·歷官·人物·墓所齋舍 總名, 各里 事蹟 등이다. 그 외의 항목들도 『宣城誌』 편찬 당시의 예안현의 사정을 자세히 담고 있으므로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宣城誌』에서는 역사에 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建置沿革·郡名 등을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建置沿革

建置沿革條에 실린 예안현의 연혁은 “본래 고구려의 買谷縣이었는데, 신라 때에 善谷으로 고치고, 奈靈郡 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태조 때에 성주 李能宣이 거의 하여 귀순하였으므로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하였다. 현종 때에 吉州에 붙였으며 辛禡가 그 태를 현지에 간직하였다 하여 다시 군으로 하였다가 얼마 후에 주로 승격하였다. 공양왕이 監務를 두었고 본조에 와서 현감으로 고쳤다.”라는 『승람』의 沿革條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의 시기를 중국 연호를 사용하여 덧붙이고, ‘辛禡의 태를 묻은 곳이 현 동쪽 20리에 있으며 속칭 鬮골이라 한다’는 사실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宣城誌』에서 권시중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처에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당시 사족의 중화주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 郡名

買谷·善谷·宣城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승람』의 내용에 덧붙여 선곡과 선성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선곡에 대한 기사는 앞에서 든 연혁조의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으며 옛 선곡현의 위치까지 언급하고 있다.<sup>38)</sup> 선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고려 태조가 반역한 견훤을 토벌할 당시 성주인 李能宣이 거의하여 왕건에게 귀속하였기 때문에 태조가 그 의리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의 이름인 宣이라는 글자로 읍호를 ‘宣城’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시켜

37) 『宣城誌』, 濶溪事蹟.

38) “옛 善谷은 지금의 榮川郡 지역인 汚川村이 바로 그곳이다.”(『宣城誌』, 郡名)

군민들로 하여금 대대로 선화를 이어가도록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오랜 기간 ‘예안’이라는 군명과 혼용되어온 ‘宣城’이라는 명칭은 이능선의 귀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古跡

古跡이라는 항목은 『宣城誌』에서 두 곳에서 발견된다. 風俗條 다음에 나오는 古跡條에서는 宜仁廢縣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祠廟條 다음에 실린 古跡條에서는 宜仁廢縣 외에 大王藪·王母城·善谷縣을 다루고 있다. 『승람』의 체제상으로 보면 사묘조 다음에 고적조가 실려있다. 따라서 풍속조 다음에 실린 고적조는 예안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듯 하며, 그 내용은 『승람』의 의인폐현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한편 歷官條 뒷부분에서도 예안현의 역사·宜仁廢縣·청량산을 다루고 있어서 의인폐현에 관한 기사는 세 번이나 등장한다. 의인폐현에 관한 세 기사 모두 승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사는 『승람』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sup>39)</sup> 두 번째 기사에서는 『승람』의 소략함에 대한 편찬자의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대가 적시된 것으로 보아 편찬자가 직접 답사를 통해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세 번째 기사에서는 편찬자가 어렸을 때부터 고적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답사를 하였음이 드러난다.<sup>41)</sup> 권시중은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단순히 기록에 의거하여 역사를 쓰기 보다 가능한 경우라면, 직접 찾아가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려는 자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4) 佛宇

『승람』에 기록된 龍壽寺·聖泉寺·骨乃寺 외에 普林寺·雲巖寺·花林寺·月

39) “현 동쪽 9리에 있다. 본래 安德縣 知道保部曲이었는데 고려 공민왕 때에 현으로 승격하여 안동에 복속시켰고, 공양왕 때에 감무를 두었다.”

40) “『승람』을 살펴보면 이 일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단지 보고 들은 것으로만 말하고 있다. 남쪽에는 토성이 있고 북쪽에는 향교터가 있었다. 의인현 및 대사는 만력 계미년(1583)과 갑신 연간(1584) 까지도 모두 있었으니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자세한 사실을 다하지 못한 것인 듯하다.”

41) “그 옛터를 살펴보니 큰 현이었던 것 같은데 줄곧 작은 현이라고 여긴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 물건너로 가서 그 터를 찾아 보았는데 옛기록에 뒷사람들이 살펴볼게 하였으나 기록이 모두다 없어지고 찾으려는 뜻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한 한은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瀾寺 등을 기록하였다. 普林寺는 琴씨들의 齋宮으로, 雲巖寺는 金緣의 유식하던 장소로, 月瀾寺는 퇴계가 유식하던 곳, 花林寺는 향소에 소속되어 종이를 만들어 바치는 곳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사찰을 승려들의 수행장소로서 보다는 사람들의 유식장소나, 匠店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臨江寺·東林寺·南陽寺·沙川寺·聖齋寺·水淸寺·切谷寺·安興寺·沙鳧寺 등 옛 터가 남아있는 폐찰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예안 지역에 폐사지의 이름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이 발달하는 만큼, 불교가 쇠퇴했음을 말해 준다.

### 5) 掌面

掌面은 예안현의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를 『宣城邑誌』의 坊里條와 비교하면 행정구역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표 7>은 『宣城誌』의 掌面條와 『宣城邑誌』의 坊里條를 비교한 것이다.

<표 7> 『宣城誌』 掌面條와 『宣城邑誌』 坊里條의 비교

『宣城誌』		『宣城邑誌』	
邑內	남명, 지삼, 만리, 천남, 가락동, 烏川	邑內面	관저리, 동부리, 만촌리, 교촌리, 대사리, 선안리, 월현리, 양장리, 오천리, 천전리
西面	조곡, 지례, 가야, 서현, 봉산, 녹전, 사천, 의현, 능곡	西面	신안리, 가야리, 사천리, 양사리, 녹전리, 지례리
北面	원당, 골매, 오천, 둔벌	北面	신기리, 둔촌리, 원당리, 어리안리, 굴현리
宜東	대리방, 박석, 담릉, 일동, 백운지, 향곡, 천사, 단사, 토빈계, 의인	宜東面	분천리, 도산리, 의인리, 상계상리, 하계상리, 천사리, 단사리, 원대리, 백운지리, 이곡리, 가사리, 고리현리, 광석리
宜西	온계, 사곡, 귀래곡	宜西面	운곡리, 안의리, 연곡리, 온계리, 사곡리
東下里	한곡, 금곡, 부라, 대라, 면계, 분천	東下面	천상리, 역동리, 부포리, 대곡리, 태동리
東上里	가동, 건천동, 피박, 고감, 말곡, 장원, 청구, 저동	東上面	성황리, 전두리, 도동리, 청구리, 말곡리, 피박리, 장갈리

위 표를 살펴보면 『宣城誌』 편찬당시에는 면리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

계로 자연촌과 행정촌이 병존하고 있으며, 리는 面의 하부 단위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행정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宣城誌』의 各里 事蹟에서 다루어진 분천·온계·부라·북계·둔곡·가야·한곡·지삼촌·만리촌·면계촌·남명촌·오천·사천·월천 등 14개 마을은 邑內와 東下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北面·宜東·東上里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한편 『宣城誌』에서는 匠店 이라하여 金谷·末谷·沙里谷·元黑·鎔洞·皮朴·勿每·沙谷·項谷·白雲池·博石·所頭疔·陵洞·祿轉·亨梅 등 匠人 거주 지역을 따로 적고 있다. 따라서 지역 유력 사족들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事跡을 다루었다면 宜東·東上里 지역은 匠店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사족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 6) 歷官

『宣城誌』의 歷官條는 앞에서 살펴본 고적이나 산천과 같은 하나의 항목이라기 보다는 『승람』의 체제상 名宦의 순서에 삽입해 놓은 「先生案」이다. 「先生」은 監司·郡守·縣監 등 이미 체거한 관리를 지칭하며 조선 왕조의 모든 관직에는 그 직을 역임한 이들의 명단이 있어 이를 「先生案」이라 했다. 『宣城誌』에서 권시중은 이를 「歷官錄」이라 칭하고 한 고을에 관원들이 부임하고 교체된 연월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다. 「先生案」은 대체로 읍지의 말미에 부록되어 전하고 있지만, 『宣城誌』에서는 중간부분에 「歷官錄」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고려 시대의 기록까지 담고 있어서 이미 개별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 『팔도지리지』의 편찬을 위해 작성된 지리지 사목에는 「曾經守令內 名賢某某」라는 항목이 있다. 또한 『승람』에도 勵將來之善을 목적으로 名宦條를 두고 있다.<sup>42)</sup> 요컨대 「先生案」은 교훈적 의미로서 일찍부터 전해지고 있었으며, 『宣城誌』에서도 같은 목적이 드러난다. 「歷官錄敍」에서 권시중은 다음과 같이 교훈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록을 펼쳐서 보며 차례로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아무개는 강직하고 분명하였으며, 또 아무개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며, 아무개는 평생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라고 하여 그들

42) 강창룡, 「16세기 사찬 읍지의 연구 -『咸州誌』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64~65쪽.

의 벼슬길이 비록 달랐다 하더라도 선과 악은 구별됨이 있었으니 두렵지 아니하겠는가?”

『宣城誌』의 「歷官錄」에는 知郡事가 다스리던 시절의 李瑯에서 吳湜까지 12명, 고려조의 감무 洪濟道와 丁夢祥, 개국초의 현감 卞雍에서 金世淳까지 16명, 태종11년(1413)에 감무를 없애고 현감을 부활한 후의 현감 金吉德에서 李裁吉까지 114명의 순서로 역대 수령의 성명과 부임·이임 년월, 체직사유,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宣城誌』의 「歷官錄」에 기록된 조선초부터 예안현에 부임해온 역대수령의 130명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부록의 <별표 1>이다. 이를 살펴보면 권시중 사후인 통훈대부 金光宇(1644. 7)부터 李裁吉(1684.3)까지의 기록이 있다. 이것은 권시중 당대와 그의 사후에도 누군가에 의해 기록이 계속되었는 사실을 말해 준다. 권시중은 “원하건대 나의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서 계속해 기록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sup>43)</sup>라는 뜻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가운데 부친의 뜻을 따랐을 것이고, 족보의 행장을 헤아려 볼 때 맏아들 震耆(1595~1684)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sup>44)</sup>

한편 「歷官錄」을 통해서는 조선시대 수령들의 교체실태를 비롯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령의 재임기간에 관한 것이다. 재임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예안현의 수령 11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5.5개월이었다. 선초 이래 수령의 임기가 30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길지 않은 기간이며 수령의 교체가 잦았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43) “願吾兒輩千萬毋忽而繼錄之幸甚”(『宣城誌』, 歷官錄敍)

44) “護軍有志行仁廟丙子后不出門外書史自娛三棄堂琴是養撰東岡自傳”, 安東權氏大同譜, 券三 中允公派, 104쪽.

45) 『태조실록』1년 7월 정미조. 그러다가 수령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영송의 폐가 극심하고 지방 실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종 5년(1423)에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연장하였다. 수령의 임기가 6期制로 되면서 수령직 회피현상이 심각해지자 外官의 가감법을 경관과 같게 하고, 수령을 역임하지 않고는 5품과 중 3품에서 각각 4품과 정3품으로 승급할 수 없게 하며, 외관에게도 행수법을 시행하는 등 수령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령직 회피를 방지하는데 주력하면서 수령의 5년임기제를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다시 수정 보완되어 『경국대전』에는 일반 수령은 1,800일, 당상수령 및 가족은 거느리지 않는 수령은 900일의 임기를 마치면 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국대전』, 吏典, 外職條.) 조선 전기 수령의 임기규정의 핵심은 한 읍에서 900일을 재직하면 다른 읍으로 천관하고, 천관 후 다

또한 119명 가운데 30개월 이상을 재임한 수령은 42명이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47.8개월이다. 세종5년에 실시된 六期制(60개월)에 의거하여 임기를 완료한 수령은 11명이다. 세종 이전에 30개월 이상 재임한 3명을 합하면 임기 완료 수령은 14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임기간이 57개월인 韓聖輔(1663.9~1668.5)의 경우 임기만료로 체직되었다고 적고 있다. 『咸州誌』의 경우 57개월, 58개월, 심지어 39개월도 교체사유에 六期라고 적고 있음에 비추어, 『宣城誌』 「歷官錄」의 기록을 통해 임기를 완료하고 떠난 수령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수령의 임기를 30개월을 기준으로 하든지, 60개월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임기를 완료한 수령의 수가 임기를 완료하지 못한 수령에 비해 적다는 사실이다.

둘째, 역대 왕들의 재위 시기별로 수령들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시기별 수령재임기간<sup>46)</sup>

재위 시기	평균 재임기간(개월)	재위 시기	평균 재임기간(개월)
태조 ~ 정종 (1392~1398)	14.4	인종~명종 (1544 ~1567)	33.6
태종 (1400 ~1418)	16.8	선조 (1567~ 1608)	25.9
세종 (1418~1450)	29.3	광해군 (1608 ~1623)	25.4
문종 ~ 세조 (1450~1468)	25.2	인조 (1623 ~1649)	18.5
예종 ~ 성종 (1469~1494)	45.6	효종 (1649 ~1659)	22
연산군 (1494~1506)	23	숙종 (1674~ 1684)	34.4
중종 (1506 ~1544)	29.5		

시 900일을 재직하여 1,800일의 수령임기를 마치면 경직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이 한 읍에서 재직해야 할 임기는 원칙적으로 900일이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수령의 임기 규정을 잘 지켜지지 않아 수령의 교체가 빈번하였다. (이희권, 『조선시대지방통치행정연구』, 집문당, 1999, 113~115쪽)

46) 재임 기간이 명확한 수령들만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재임기간이 2대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임기의 절반이상인 왕대에 편입시켜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수령의 임기가 30개월이었던 태조~태종 때에는 수령의 평균 재임기간이 매우 짧았다. 六期制가 시행된 세종 연간부터 수령의 재임기간이 늘어나, 중앙 집권이 완성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문물이 발전하는 시기인 성종 연간에는 평균 재임기간이 45.6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향촌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지며, 이 시기에 부임한 6명의 수령 중 5명이 善治名官으로 기록되었다. 성종 연간에 늘어났던 재임기간은 연산군 때 다시 줄어들고, 중종·명종 연건을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당쟁이 시작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혼란기인 선조 연간부터 다시 줄어들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인조 연간에는 18.5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예안현의 혼란상을 짐작케 한다. 줄어든 재임기간은 효종 연건을 거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숙종 연간에는 평균 재임기간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대 왕별 수령의 평균 재임 기간의 변화는 정치가 안정되면 수령의 재임기간이 늘어나 향촌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정치가 혼란할 경우 수령의 잦은 교체와 지방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수령들의 교체사유에 관한 것이다. 『宣城誌』의 「歷官錄」에 기록된 조선조 130명의 수령 가운데 구체적인 교체 사유를 적고 있는 72명을 통해 그 사유를 살펴보았다. 파직된 자가 가장 많아 37명이고 전직이나 승진이 18명, 喪을 당한 경우가 6명, 稱病을 포함한 사직이 4명, 임기만료가 3명, 사망이 3명, 棄職이 1명 등이었다.<sup>47)</sup>

예안현에서 파직으로 인해 교체된 수령은 전체 130명 중 37명으로 28.5%에 이르는데, 이는 함안 군수의 27.6% 와 비슷한 수준이다.<sup>48)</sup> 이처럼 징계에 의한 교체가 빈번한 이유는 수령에 대한 처벌 규정이 256건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왕을 대신하여 향촌 사회의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었던 수령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찰을 통해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령의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방 통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다.<sup>49)</sup>

47) 육기제가 시행된 세종5년 이후 예안현에 부임한 관리로서 60개월 이상을 재임한 수령을 모두 임기만료로 본다면 11명이며, 57개월을 임기만료로 기록하고 있는 歷官錄을 따라 57개월 이상을 임기만료로 본다면 14명이 된다.

48) 강창룡, 앞의 논문. 69쪽.

또한 파직으로 인한 교체는 임란을 전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파직으로 교체된 37명중 임란이후에 부임한 수령이 34명이나 되며 이는 임란 이후에 예안현에 부임한 44명의 77%나 된다. 물론 이것은 법전이 정비되면서 수령 처벌 규정이 점차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임란 이후에 그만큼 지방 통치 행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넷째, 예안현에 부임해 온 수령들의 품계에 대한 것이다. 조선시대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관들의 품계는 부윤이 종2품, 대도호부사 정3품, 목사 정3품, 도호부사 종3품, 지군사 종4품, 현령 종5품, 현감 종6품<sup>50)</sup>으로 구별되었다. 『宣城誌』의 「歷官錄」에 품계가 기록된 82명의 품계는 <표 9>와 같다.

<표 9> 예안현에 부임한 수령의 품계

품계		인원(명)	품계		인원(명)
정3품 상	通政大夫	·	정5품 상	通德郎	8
하	通訓大夫	26	하	通善郎	3
종3품 상	中職大夫	1	종5품 상	奉直郎	6
하	中訓大夫	·	하	奉訓郎	3
정4품 상	奉正大夫	·	정6품 상	承議郎	6
하	奉烈大夫	1	하	承訓郎	6
종4품 상	朝散大夫	3	종6품 상	宣敎郎	9
하	朝奉大夫	2	하	宣務郎	8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예안현에는 종6품은 17명에 지나지 않고 정3품에 해당하는 통훈대부가 26명으로 가장 많다. 더욱이 임란 이후에는 예안현에 더 이상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지 않고 있으며, 임란 후 예안현에 부임한 44명 중 정3품 통훈대부는 19명으로 43.4%에 달했다. 실록에 따르면 “예안은 영남의 문헌의 고장이요 또 선유의 서원이 있는 곳으로 현감을 반드시 문관으로 차임해 보내는 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sup>51)</sup>이라 하여 예안현의 수

49) 임호민, 「조선후기 수령의 성분과 교체에 대한 고찰- 강릉대도호부를 중심으로-」, 『관동문화』, 1994, 96쪽.

50)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條.

령택차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령의 품계가 높아진 것은 퇴계 이황 이후 예안의 위상이 높아진 사실과 피폐해진 향촌의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재지 사족들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歷官錄」에 따르면 예안 지역의 사족들은 수령의 교체에도 간여했는데, 향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수령이 4명이나 되었다.

### 7) 名宦

『宣城誌』에서 名宦은 두 곳에 실려 있다. 그 하나는 官員을 기록한 항목에 덧붙인 것이다. 고려말 禡王 때 부임한 명관 5명·조선조에 부임한 청렴명관 16명·公廉正直直名官 17명이 실려있다. 다른 하나는 『宣城誌』 뒷부분의 「歷官錄」이다. 여기에는 舊時高麗朝善治名官 12명<sup>52)</sup>, 開國初至今時善治名官 53명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들 명단은 대부분 중복되고, 전자에 실린 名官 중 文汝衡(1445.12~1448.12)의 이름은 후자의 명단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宣城誌』에 실린 명관들에 대해서는 「歷官錄」을 통하여 부임 및 이임 연월·체직 사유·업적 등을 살필 수 있었다. 善治名官으로 기록된 이름 중에 「歷官錄」에 이름이 빠져있는 李陞를 제외한 52명의 명단은 <표 10>과 같다.

<표 10> 조선시대 예안현의 善治名官

번호	관직	赴任 수령	부임	이임	재임 기간 (월)	교체 이유	업적
1	通德郎	成路	1395. 6	1396. 6	13		선정을 베풀고 형벌을 쓰지 않았다.
2	承議郎	蔡顥	1396. 6	1398. 11	28	禮賓寺主簿 에 배명	부역을 공평히 해 전 고을이 편안했다.
3		李文命	1398. 11	1400. 1	15	永川으로 移任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삼갔으며 일을 처리함에 정밀하고 자상했다.
4		權踐	1400. 2	1400. 7	6	北部 수에 배명	도량이 넓고 위위가 있었다. 청렴정직하여 일을 처리함에 시의에 맞았다.
5	宣務郎	吳淑	1400. 8	1401. 7	12	母親喪	청렴하고 일을 처리함에 사사로움이 없었다.

51) 『선조실록』, 32년 7월 무오조, 38년 6월 갑자조.

52) 고려조선치명관이라 하여 12명의 명단을 적고 있으나 이들의 부임, 이임시기를 비교해보면 12명은 홍무10년(1377)부터 기사년(1389)까지 예안에 부임한 지군사 모두를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직 수령의 이임후 후임 수령의 부임시까지의 공백이 길지 않은 까닭이다.

6	奉訓郎	尹興義	1401. 8	1402. 7	12		청렴하고 삼가며 공평하게 다스렸다.
7		成拵	1402. 8	1403. 11	16	廣州로 移任	도량이 넓고 간중하였으며, 공명하고 굳세어 일을 처리함에 정밀하고 자상했다. 어짐과 용서함을 겸비하여 백성들은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8		成守良	1404. 2	1404. 11	10		청백한 행정을 펼쳤다.
9	奉直郎	朴原禮	1405. 1	1406. 윤 7	19		민간의 폐단을 없앴고 힘쓰고 삼가는 것으로 직무를 이행했다.
10	承議郎	羅尙之	1409. 3	1411. 9	31	內贍主簿에 배명	정치를 깨끗하게 했고 민간의 폐단을 없앴다.
11	奉直郎	金世淳	1412. 1	1412. 10	9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소박하였으며 늙고 병든 사람들을 잘 돌봐 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12	宣務郎	姜友德	1415. 9	1416. 12	15		정치를 청백하게 했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였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정밀하고 자세했다.
13		鄭介保	1416. 12	1417. 12	12		청백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일을 처리함에 자상했다.
14	宣務郎	曹世範	1419. 1	1421. 3	25		일을 처리함에 마땅했으며 백성들의 송사를 명쾌하게 해결했으며 궁핍한 백성들을 구제했다.
15	宣敎郎	李永茂	1421. 3	1422. 10	19		청렴하고 명확한 판단이 있었으며 백성들의 폐단을 없앴다.
16	通德郎	朴潔	1422. 10	1427. 7	57	護軍에 배명	추홍정 창건
17	宣敎郎	鄭斯仁	1427. 7	1429. 11	29	母親喪	정치를 청백하게 하였고, 일을 처리함에 자상하고 명쾌하였으며 형벌을 가볍게 했다.
18	承訓郎	趙夏	1430. 1	1434. 12	48	都官佐郎에 배명	일을 함에 능하였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였다. 늙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가난한 이를 구제했다.
19	宣敎郎	愼言	1439. 4	1442. 12	45		공무를 처리함에 청백하였다.
20	宣務郎	崔士老	1443. 1	1444. 2	13	病	청렴하고 정직하며 욕심이 적었고 언행이 범도에 맞았다. 정치가 청렴하였고 간이하였으며 일곱가지 일을 행하였다.
21	宣敎郎	權倦	1444. 7	1445. 11	17	父親喪	청렴하고 정직하여 사사로움이 없었다. 일을 처리함에 마땅하였으며 늙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곤궁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백성들의 폐단을 근절시켰다.
22	奉訓郎	趙增	1449. 2	1451. 7	29		정직하였으며 일을 처리함에 모두 사리에 합당하였다.
23	承訓郎	鄭係	1451. 7	1452. 7	12		공명 정직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함에 강직하고도 명확하였다.
24	宣務郎	權景行	1452. 7	1455. 12	42		공명正大하고 부역을 균일하게 시행하였다.
25		曹變興	1456. 4	1460. 3	48	指館	공명 정직하였다.
26	通善郎	安億壽	1460. 5	1464. 1	44	通德郎으로 遞職	청렴하고 정직하였으며 일을 처리함에 모두 사리에 맞았다.
27		許斯孝	1468. 2	1473. 2	61	典監司別提 로 옮김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함에 자상하고 명쾌하였으며 온 고을에 부역을 균등하게 베풀었다.
28		金貴知	1473. 3	1476. 2	36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자상하고도 명쾌하였다.

29		李持	1476. 3	1481. 3	61	司導寺主簿 로 읍김	정치는 공명하고자 노력하였고 늘 정직하려 하였다.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더욱 명확하였으며 그가 떠난 후 백성들은 더욱 그를 그렸다.
30	奉直郎	李義根	1482. 8	1487. 9	61	司宰監主簿 로 읍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정대하게 했고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강직하고도 명쾌하여 모두 사리에 마땅하였다.
31	承訓郎	李管林	1487. 9	1490. 9	37	圖畫署別提 로 읍김	청렴하고 삼가며 정의롭고 자상하였으며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확하고 공정하였다.
32	宣務郎	金詮	1490. 10	1494. 10	48	黃澗縣監	공명하고 정직하였고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쾌하였다. 부역을 균등하게 실시했고, 형벌을 적게 하여 백성들이 그를 흠모하여 생사당을 세웠다.
33	通訓大夫	裴季厚	1501. 7	1503. 6	24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확하고도 공정하였다.
34	通訓大夫	洪義孫	1509. 6	1514. 1	56		공명 정직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모두 다 자상하였다.
35		崔決	1514. 12	1516. 7	20		일을 처리함에 관대하였으며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확하고도 공정했다.
36	朝散大夫	鄭公徵	1522. 11	1526. 11	49		일을 처리함에 관대하였으며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확하고도 공정하였으며 세금을 균등하게 배웠으며 형벌을 적게 했다.
37	宣敎郎	金守雍	1540. 9	1543. 3	31		청백하고 공정하게 다스렸고 나아가 도량도 넓었다. 송사를 명쾌하고도 공정하게 다스렸으며, 부역을 덜어 주었다.
38		金世憲	1543. 7	1544. 2	8		정사가 청렴하고 상벌을 줄에 있어서 매우 공정했고 부역을 공평하게 시행했다.
39	承議郎	任鼎臣	1544. 3	1549. 1	59	黃海都事에 배명	공명하고 청렴결백하였으며 송사를 다스림에 공정하였다. 형벌을 적게 배웠고 세금을 덜어주었다.
40		李鳳壽	1550. 11	1555. 11	61		청렴하여 조금도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고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는 오직 명쾌했다. 형벌을 덜어 주고 부역을 균등하게 시행했다.
41		魚叔義	1557. 1	1562. 1	61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명쾌하고 공정했으며 형벌을 덜어주고 부역을 공평하게 시행했다.
42	宣敎郎	郭趙	1563. 2	1568. 2	61		청렴하고 형벌을 덜어 주었으며 의능을 내어 역동서원을 창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삼았다.
43	通德郎	柳夢鼎	1574. 10	1577. 8	35		청렴하여 고을 다스림과 일을 처리함에 정밀하고도 자상하였다. 백성들의 송사를 다스림에 공평하였고 형벌을 덜고 세금을 가볍게 배웠다.
44		羅藎國	1578. 1	1578. 7	7		청렴하게 고을을 다스렸다.
45	通訓大夫	李俊宗	1578. 9	1581. 9	37		일을 처리함에 모두 사리에 합당하였으며 형벌을 가볍게 하고 부역을 공평하게 하였다.
46	宣敎郎	李軸	1581. 11	1582. 3	5		백성들을 애호하여 형벌을 가볍게 부역을 공평하게 시행하여 지극히 밝고 깨끗하였다.
47	朝奉大夫	郭懷瑾	1583.4	1588.1	58		품위가 있었고 기강을 세워 나라일에 근간이 되었다.
48	承議郎	申之梯	1590.7	1596.9	75	임진왜란으로 임기만료 후 1년간 더 머 물렀음	임진년에 주민들과 피난하였는데 일을 처리함에 더욱 어질어서 주리고 병든자를 구제하여 크게 민심을 얻었다. 관청의 곡식을 소비하지 않고서도 주민들을 구해 살리니 매양 고을의 원로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물었다.
49		金廷龍	1596.10	1599.9	36	과직	왜란을 만나 백성들의 요역이 번거로왔는데 백성들을 애호하여 형벌을 덜어 주었으며 비분강개하여 시대를 한탄하였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적어 파직당하여 떠날 때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아파 하였다.

50		金就義	1599.9	1601.6	22	향교에서 내쫓기고, 증양에 보고되어 파직	일을 처리함에 조용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없었다
51		朴善長	1608.7	1609.3	9	파직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일을 처리함에는 자상하고 명쾌하였다. 관청의 재정이 매우 곤궁하였으나 부임한 이후 비축한 식량이 돌아갈 때는 20석을 창고에 남겨 그이 턱을 입은이가 많았다.
52	通訓大夫	李繼祉	1613.9	1619.3	66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청렴하고 강직하였고 아랫사람들에게 엄하여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직무에 충실하니 고을이 편안해졌다. 심지어 빌어 먹는 사람들도 그를 믿어서 떠돌아 다니지 않았다. 모든 주민들이 아름다운 군자라 칭송했다.

위 표의 역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32.9개월로, 조선초부터 예안현에 부임한 현감 130명 중에서 재임기간을 알 수 있는 역대 수령 119명의 평균 재임기간 25.5개월보다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령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善治名官들의 덕목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 ① 청렴정직하게 백성을 다스린다.
- ② 백성들의 송사를 명쾌하게 처리한다.
- ③ 부역과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한다.
- ④ 형벌을 적게 한다.
- ⑤ 가난하고 병든자를 구제한다.
- ⑥ 민간의 폐단을 없앤다.
- ⑦ 합리적이고 자상하게 일을 처리한다.
- ⑧ 권농과 인재양성에 힘쓴다.
- ⑨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다.

조선조 수령의 인사 평정 기준이 되기도 했던 守令七事는 農桑增 · 戶口增 · 學校興 · 軍政修 · 賦役均 · 奸猾息 · 詞訟簡 등이었다.<sup>53)</sup> 이것이 地方守令이 가장 중시하여야 할 조목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詞訟簡, 賦役均 등의 임무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권시중이 제시하는 덕목으로 미루어볼 때, 그가 요구하는 수령관은 청렴정직하면서도 공평하고 명쾌한 일 처리를 통하여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수령이라는 사

53) 考課條, 〈吏典〉, 《경국대전》.

실을 알 수 있다.

백성의 편에서 일하는 수령을 요구하는 그의 수령관은 善治名官으로 꼽힌 수령들 가운데 파직된 3명의 수령에게서 분명해진다. 파직되었다는 것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수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善治名官으로 들고 있다. 그들의 파직 사유에 대해 金廷龍의 경우는 경차관 이상신이 보고하여, 金就義는 일을 처리함에 혼미함으로 향교에서 내쫓기고 중앙에 보고되어, 그리고 朴善長은 국가의 세금 마감 기일을 넘긴 사유로 수사가 중앙에 보고하여 파직되었다고 적었다. 이 세 사람이 권시중 생존 연간에 수령으로 부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권시중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역 사립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령의 기준에는 미흡해서 비록 파직을 당했을지라도, 권시중은 백성들을 애호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며 백성들의 구제에 힘쓰는 수령을 선치명관으로 꼽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권시중의 애민정신은 「歷官錄敍」에서 잘 나타난다.<sup>54)</sup>

## 8) 인물

『宣城誌』에서 인물과 관계된 항목은 寓居·孝子·宣城市賢軒號·始居·古來先進·南行·各里 事蹟 등이다. 인물과 관계된 항목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인물의 중복이 심하다는 점과 인물을 소개할 때는 祖先을 먼저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 (1) 寓居

前朝寓居·前後寓居·各面寓居로 나뉘어 있는데 前朝寓居는 우탁 등 9명의 출신지와 정착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前後寓居에서는 어디에서 누가 예안으로 들어와 그 후 몇대를 살았는가를 기록하였다. 모두 25명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5명이 前朝寓居와 중복된다. 各面寓居에서는 浮浦·西村·溫溪·鈍伐 지역의 우거자 1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이 前後寓居와 중복된다.

### (2) 孝子

旌門이 내려진 효자 黃載와 禹錫寶를 기록하였다. 황재는 고려 때 벼슬을

---

54) “대개 고금 역대 수령들의 성명과 그 성명 아래에 잘 다스림과 잘 다스리지 못한 업적을 기록하였으며 잘 다스린 사람은 그를 크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더욱 벌을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다.”(『宣城誌』, 歷官錄敍)

하였으며, 우석보는 우탁의 玄孫이다. 효자로 기록된 황재와 우석보는 모두 사대부이다.

충신·효자·열녀는 삼강에 관계되는 항목으로서 매우 강조된 덕목이었다. 『승람』에서는 인물조의 한 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그 지방 출신의 유명 인물을 기록한 후 충신·효자·열녀 등을 덧붙였다. 『승람』을 모범으로 한 당시의 사찬읍지들도 명환과 더불어 효자와 열녀조를 수록하고, 효자와 열녀의 경우는 신분의 高下貴賤을 막론하고 기록하였다. 다만 순서를 구분하여 사대부를 앞에 기록하고 천류를 뒤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宣城誌』의 경우 효자만 기록되었을 뿐, 『宣城邑誌』에 기록된 노비 승립의 딸의 효행과 열녀 권씨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다. 『宣城邑誌』의 내용으로 보아서 노비 승립의 딸은 숙종조에 정려에 명해졌으므로 권시중 사후에 일어난 일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열녀 권씨의 경우 만력 병진년(1616)년에 정려가 내려졌으므로 권시중의 생존연간의 일이며, 권시중이 『宣城誌』 서문을 쓴 시기(1619)보다 앞선다. 따라서 예안현에 살았던 권시중이 정려가 내려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宣城誌』 전체를 통틀어 여성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여성에 대한 기록이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3) 名賢軒號

예안현에 살았던 명현들 25명의 軒號를 기록해 두었다. 이들 대부분은 인물조를 통해 소개가 되는데, 來洞 立巖 金滸와 定省 琴應商의 경우 『宣城誌』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 (4) 始居

부라촌 등 18개의 자연부락의 始居者와 역동서원·도산서원을 세운 경위를 적고 있는데 물론 시거자는 士族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예안현의 사족들의 정착과정을 살필 수가 있다. 예안현의 土姓<sup>55)</sup>이 아닌 성씨는 대개 혼인관계에 의해 妻鄉인 예안현에 이거해 와서 정착하였다. 琴淑은 봉화에서 權簡의 사위

55) 예안현의 토성에 대해 각 지리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慶尙道地理志』 : 金, 李, 禹, 趙, 安, 韓, 姜
2. 『世宗實錄地理志』 : 金·李·禹·趙·安·姜, 宜仁 金
3. 『新增東國輿地勝覽』 : 金, 李, 禹, 趙, 安, 權, 姜, 朴, 鄭, 崔, 賈. 宜仁 金
4. 『宣城誌』 : 金, 李, 禹, 安, 權, 姜, 朴, 鄭, 崔, 賈

가 되어 浮羅에, 南桂은 울진에서 權景達의 孫婿가 되어 北溪에, 尹宇는 안동에서 남규의 사위가 되어 北溪에, 卞淸源은 金智老의 사위가 되어 檀野에 각각 시거하였다.

예안현내에서의 移居인 경우는 사대부들의 卜居와 자손의 증가로 살 곳을 찾아 분가하는 경우이다. 溫溪로 이거한 李繼陽의 경우 복거지를 찾은 경우이며, 綿溪의 權受福, 退溪의 李滉, 조곡의 尹義貞 등은 분가할 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5) 本居 人物

金憲을 비롯하여 李箴·權受益·李賢輔·李堦·金緣·金欽祖·權鯤·柳宗介·金垓 등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어서 뒷부분에 琴蘭秀의 아들 恪이 지은 「日洞錄」, 李重吉이 權鯤에게 쓴 편지글인 「送權伯魚序」, 권시중이 쓴 「權校理實錄」, 鄭崑壽가 쓴 「權校理傳」 등을 첨가하였다. 「권교리실록」과 「권교리전」은 모두 權雲에 관한 것으로 인물조에 실리지 않은 權雲을 소개하기 위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 (6) 各里 事蹟

『宣城誌』는 앞부분에서는 예안현을 『승람』의 순서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뒷부분에서 각리별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각리 사적은 본 연구자가 제목을 붙인 것일 뿐 실제로는 本居人物 다음에 바로 汾川事蹟이 기록되었다. 분천 사적은 농암 이현보의 기록을 인용하고, 이현보와 그의 자식들의 詩를 싣고 있다. 堂亭各名에 이은 인물조에서는 이파를 비롯한 영천 이씨 7대 18명을 기록하고 있다. 분천 인물조에는 이현보 가문만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溫溪事蹟에서는 인물 항목이 따로 없고 登科 4명, 사마 13명, 南行 4명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마을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浮羅事蹟에서는 권간을 비롯한 안동 권씨와 안동 권씨의 사위가 되어 시거하게 된 琴淑의 후손 등 22명을 기록하였다. 안동 권씨 외에 기록된 他 姓들은 모두 사위가 되어 시거하게 된 경우이다. 「浮羅村 壽骨」이라 하여 80세 이상을 산 사람들 7명을 기록한 점이 특이하다. 北溪事蹟에서는 권경달 등 8명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권씨 외에는 혼인관계에 의해 입향한 경우이다. 北溪事蹟의 뒷 부분에는 권시중의 이야기인 임흥의 양로낭설과 윤의정의 발문이 붙어있다. 檀野의 事蹟에

서는 金智老·柳公智·卞淸源·禹義賢, 金生溟·朴士燾·李簇·尹義貞·柳斌 등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柳斌과 尹義貞의 실록을 덧붙여 놓았다. 寒谷事蹟에서는 예안의 토성인 金孝友와 그의 후손 7명, 혼인 관계에 의해 살게 된 南應箕·孫葵 등을 기록하였다. 知三村事蹟에서는 禹倬을 비롯한 丹陽 禹氏 12대 13명과 그들과의 혼인관계에 의해 살게 된 孫玗·黃熹, 金廷準 등을 기록하였다. 萬里村·綿溪村·南溟村·烏川·沙川·月川의 경우에는 事蹟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綿溪村에서는 權受福·權矩·權涑·權洛 등을 기록하였는데, 권시중의 직계인 관계로 기록이 자세하다. 烏川에서는 山川·各名·風俗·人物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으며, 人物條에서는 金孝盧를 비롯한 광산 김씨 4대 11명과 봉화 금씨 3명을 기록하였다. 沙川에서는 金懷寶·金欽祖 등이 언급되었다. 月川에서는 權受益을 비롯한 안동 권씨 3대 3명과 그들과의 혼인관계에 의해 살게 蔡承先·趙大春·朴守誼 등을 기록하고, 뒷부분에 「月川先生實錄」과 조목의 詩를 실고 있다.

各里 事蹟의 내용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雲郊’에 관한 것이다. 雲郊는 紙匠里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권시중은 雲郊에 거주하던 양민과 紙匠의 이름을 적고 있다. 『宣城誌』에 기록된 士族 이외의 이름으로는 匠店結卜數에서 匠人들의 이름이 있었다.

한편 各里事蹟의 人物條를 姓貫別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 성관별 인물<sup>56)</sup>

各里	姓貫	기록 인물
汾川	永川 李 (7대 18명)	李坡, 李孝孫, 李誠孫, 李欽, 李鈞, 李賢輔, 李賢佑, 李賢俊, 李文樑, 李希樑, 李仲樑, 李季樑, 李叔樑, 李閏樑, 李衍樑, 李遂樑, 李光承, 李誠承, 李芸
溫溪	眞寶 李 (5대 14명) 高敞 吳(3대 3명) 永川 李(1명) 奉化 琴(1명) 達城 徐(1명)	李繼陽, 李植, 李堦, 李滄, 李滉, 李澄, 李壽筈, 李寧, 李교, 李完, 李宏, 李宰, 李闕道, 李宗道 吳彦毅, 吳守盈, 吳淦 李國梁 琴輔 徐千一

56) 各里事蹟에서 인물조항이 따로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登科, 司馬, 南行으로 기록된 溫溪를 포함했다.

浮羅	安東 權(4대 7명) 奉化 琴 (5대 16명)  申(1명) 月城 孫(1명)	權簡, 權謙, 權受益, 權受德, 權受福, 權準, 權洙, 琴淑, 琴崑, 琴嵩, 琴嶺, 琴峻, 琴崙, 琴致誠, 琴致韶, 琴應商, 琴應角, 琴應羽, 琴蘭秀, 琴憬, 琴業, 琴愷, 琴恪 申光渭 孫芻
北溪	安東 權(4대 4명) 英陽 南(3대 3명) 尹(1명)	權景達, 權仞, 權任, 權耆壽 南桂, 南應斗, 南應箕 尹宇
寒谷	禮安 金 (6대 8명) 月城 孫(1명)	金孝友, 金崇祖, 金欽祖, 金繼祖, 金夢石, 金揚震, 金澤龍, 金琚 孫葵
知三村	丹陽 禹 (10대 13명) 月城 孫(2대 3명) 安東 金 平海 黃	禹倬, 禹元光, 禹元明, 禹沈, 禹義, 禹洪鈞, 禹鳳生, 禹亨孫, 禹亨元, 禹磬賢, 禹仁賢, 禹希信, 禹成績 孫玪, 孫文伯, 孫文仲 金廷準 黃熹
綿溪村	安東 權(4대 4명) 永川 李(1명)	權受福, 權矩, 權洙, 權洛 李鈞
烏川	光山 金 (4대 11명) 奉化 琴(3대 3명)	金孝盧, 金綬, 金緣, 金富弼, 金富儀, 金富信, 金富倫, 金富仁, 金圻, 金垓, 金垓 琴梓, 琴應夾, 琴應燾
月川	安東 權(2대 3명) 平康 蔡(3대 3명) 橫城 趙(3대 4명)	權受益, 權鯤, 權雲 蔡承先, 蔡雲慶, 蔡衍 趙大春, 趙穆, 趙壽朋, 趙錫朋

위 표를 보면 『宣城誌』에 소개된 인물은 永川 李·眞寶 李·安東 權·丹陽 禹·光山 金·奉化 琴·禮安 金氏 가문에 집중된다. 이 중 土姓은 禮安 金氏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이거해와서 예안 지역에서 명문사족화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7) 宣城 古來 先進

黃載·禹沈·禹義·南和緩·權景達·李晟·禹洪鈞·琴崙·孫玪·孫文仲·權珽·金閔石·李仁堅 등의 登科와 生進 등을 기록하였다.

(8) 禮安 前後 南行

金道生 등 고려 때 인물 4명, 李文樑 등 조선 때 인물 7명을 기록하였는데 선성 고래 선진과 예안 전후 남행에 기록된 인물 대부분은 각리 사적에서 소

개되었다.

(9) 墓所 齋舍 總名

지역 명현들의 묘소 위치와 재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 있는 인물은 권수익·금치함·권간·이황·이현보·김을방·김흠조·이문량·손문중·김효로·김방경·조목·우탁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인물조, 시거조, 우거조, 그리고 각리 사적조에서 중복 소개되고 있다.

### 3. 교육과 향촌사회 운영

사족에 의한 예안현의 교육과 향촌사회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은 風俗·樓亭·學校 등이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풍속

예안현의 풍속은 “절약하고 검소함을 숭상한다. 지역은 偏小하고 토질은 척박하며 백성들은 가난하다”는 『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각리 사적에서 온계와 오천은 풍속을 독립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sup>57)</sup> 예안현의 각 마을 중에서 특히 登科와 生進이 많은 溫溪와 烏川의 풍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교화의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樓亭

秋興亭·東樓·雙壁亭·滌金堂·射廳 등을 명사들의 시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누정들은 사족들의 학문적·문화적 활동의 장소로서 유교적인 교육과 문화 및 향촌사회에서의 정치·사회·문화적 모임과 논의는 주로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졌다.<sup>58)</sup>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樓亭을

57) “옛부터 법도가 있었고 백성들은 시례를 숭상하였는데 하물며 선생이 태어나셨음에라 그 풍습이 더욱더 아정하여 집집마다 孝友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세상이 멀어지고 사람은 없어져 탄식만 남았다. 어찌 지령이 옛과 같지 못하기 때문이겠나 진성기에 있어서는 동헌들이 이 마을에서 나왔으며 또 퇴계 선생의 정규가 있다.”(『宣城誌』, 溫溪事蹟)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며 형은 우애하고 공손하며 시비를 분명히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되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며 성품이 엄정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 글을 잘 지었으니 참으로 군자다웠다. 집집마다 사마요 또 집집마다 시와 술이 있어 손님을 맞음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으며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宣城誌』, 烏川事蹟)

58) 이수건, 앞의 책, 12쪽.

소개하는 것도 교화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 3) 學校

鄉校 외에 書院을 신증하여 易東書院과 陶山書院을 기록하고 있다. 도산서원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을 추모하는 奉安文·恒用祝文·埋誌石告文·文集告成文·刻天淵臺告文·耐宗廟錄 등을 실고, 퇴계가 직접 쓴 鄉射堂約條 序文과 約條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琴蘭秀가 쓴 禁斷土豪侵店匠人田規와 匠店結卜數를 기록하였다.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조직과 규약은 유향소와 향안·향규, 향약, 동약·동계·죽계, 서원과 향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직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유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향촌 지배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59)</sup> 『宣城誌』의 學校條는 바로 이러한 향촌 지배 조직과 규약을 실고 있다. 임란으로 파괴된 향촌 질서를 재지사족층이 중심이 되어 회복함으로써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보할 목적, 재지사족들의 위세를 현양하려는 의도, 자기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성리학적인 윤리관에 의거하여 변모하여가는 향촌 질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 등 『宣城誌』 편찬 목적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편목이라고 하겠다. 학교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鄉校

향교와 서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성리학의 보급과 확대를 통하여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일차적인 기능을 넘어서 학문적인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향촌지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향교는 관학으로서 선초부터 적극적으로 설치되면서 성리학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여기에 설치된 문묘와 석전제의 거행은 사족의 주요 관심사였다. 『宣城誌』는 ‘현 북쪽 1리에 있다’라고 간단히 기록된 『승람』의 내용을 新增하고, 추로지향으로서의 예안현에 대한 자긍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sup>60)</sup>

59) 정진영,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구조」,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1998, 한길사, 239쪽.

60) “농암 이선생, 송재 이선생, 퇴계 이선생의 세 어진이가 일시에 배출되어 士風을 배양하는 일로 급무를 삼아 향교의 법도가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사습을 엄격하게 하여 문사들

## (2) 書院

서원은 16세기 초반 이래 수령의 협조아래 재지사족에 의해 적극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서원에서의 성리학적 수기와 실천은 16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분명 새로운 사회운동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봉건 지배이데올로기의 보급과 재생산이었다. 따라서 서원의 기능은 성리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실천하여 과거 중심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학문태도에서 오는 양반사회의 파탄과 하층민의 지나친 침학에서 오는 향촌사회의 피폐 등 사족 공동의 이해를 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와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보다 확실하게 유지·보장하고자 한 것에 있었다.<sup>61)</sup> 『宣城誌』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서원으로서 우탁의 위패를 봉안한 역동서원과 퇴계 이황의 위패를 봉안한 도산서원의 설립경위와 서원의 내부 구조를 기록하고 있다.

## (3) 鄉射堂約條 序文, 約條

조선 향약의 시초로 退溪鄉約이나 禮安鄉約, 또는 禮安約條로 불리워지는 「鄉立約條序 附約條」를 실고 있다. 퇴계가 쓴 서문에는 입약취지·향대부의 사명·작성 경위·별조 위주로 입조한 이유를 천명하고 있으며 부속 약조의 각 별조는 극별조 7조목·중별조 16조목·하별조 5조목·별칙이 명시되지 않은 조항 4조목으로 짜여져 있다.

鄉射堂約條의 서문은 가정 병자년(명종11, 1556) 12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鄉射堂約條는 향속이 나빠져 감을 걱정하는 농암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때 만든 약조는 퇴계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논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조 위주로 약조를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도 德業 조항은 이미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별 위주로 된 鄉射堂約條는 처음부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는 “혹은 이르기를 ‘먼

---

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여 사마를 점차로 배출하니 온 고을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 … 여러 고을에서는 이 일을 좇아 풍속을 이루었으니 무릇 선비가 된 사람들은 다투어 우리 고을을 본받으려 할 것이요, 비록 고을의 면적이 작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다른 고을에서 저절로 따르고 흠모하기에 또 겨를이 없고, ‘추로의 고을이다’라고 칭찬할 것이다. …대소 관료들은 예안 고을을 문헌지방이라 일컬었고, 또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영남의 사론이 모두 이 향교 안에서 나온다 하였다.” (『宣城誌』, 學校)

61) 정진영,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구조」, 앞의 책, 244-245쪽.

저 가르침을 세우지 않고 다만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된다’하니 그 말이 진실로 그럴 듯하다.”고 인정하는 데서 알 수 있다.

郷射堂約條의 부속약조의 각 별조 조항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約條의 罰條 條項

<p>極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에게 불순한자(불효죄는 나라에서 정한 벌칙이 있다. 그 때문에 그 다음 죄만 들었다.)</li> <li>2.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자(형이 그르고 아우가 옳으면 균벌한다. 형이 옳고 아우가 그르면 아우만 벌한다. 둘 다 잘못이 비슷하면 형은 가볍게 아우는 무겁게 한다.)</li> <li>3. 家道를 거슬러 어지럽힌 자(부처간에 손찌검하고 욕 한자, 본처를 쫓아낸 자, 첩을 처로 뒤바꾼 자, 서자를 적자로 삼은 자, 적자가 서얼을 아끼지 않는 자,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자)</li> <li>4. 사건이 관청에 저촉되어 고을의 풍속을 어지럽힌 자</li> <li>5. 망녕되어 위세를 부려 관청을 소란스럽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li> <li>6. 鄉長을 능멸하는 자</li> <li>7. 수절하는 과부를 유인하여 더럽힌 자 이상은 상중하로 나누어 극벌한다.</li> </ol>
<p>中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친척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li> <li>9. 본처를 박대하는 자. (처가 죄가 있는 경우는 감등한다.)</li> <li>10. 이웃과 불화한 자.</li> <li>11. 동료들과 싸우는 자.</li> <li>12.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士風을 더럽힌 자.</li> <li>13. 강함을 믿고 약자를 능멸하며 침탈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자.</li> <li>14. 무뢰한 자들과 봉당을 만들어 난폭한 짓을 많이 하는 자.</li> <li>15. 공사간에 모여서 관청의 시비를 말하는 자.</li> <li>16. 헛된 말을 조작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li> <li>17. 환란에 힘이 미치는 데도 보기만 하고 돕지 않는 자.</li> <li>18. 관가의 책임을 지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를 끼친 자.</li> <li>19. 혼인과 상제에 까닭없이 시기를 넘긴 자.</li> <li>20. 執綱을 무시하고 鄉令을 따르지 않는 자.</li> <li>21. 향론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li> <li>22. 집강이 사정에 따라 함부로 행안에 들게 한 자.</li> <li>23. 구임 수령의 전송에 까닭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이상은 상중하로 나누어 중벌한다.</li> </ol>

下罰	24. 공식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자. 25. 문란하게 앉아 예의를 잃은 자. 26. 좌중에서 떠들고 싸우는 자. 27. 앉을 자리를 비우고 물러가 자기의 편리만 취하는 자. 28. 이유없이 먼저 나가는 자. 이상은 상중하로 나누어 하벌한다.
附書	29. 아주 나쁜 鄉吏 30. 향리로서 민간에 폐를 끼친 자. 31. 공물 값을 비싸게 징수하는 자. 32. 서인의 신분으로서 사족을 능멸하는 자.

위 32개의 조목 가운데 부서된 4개 조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대상이 다른 아닌 사족 자신으로, 퇴계의 鄉射堂約條는 향약의 일반적인 성격인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보다는 재지사족 자신의 유교적 생활 규범의 확립과 官政에 대한 시비의 엄금, 그리고 하층민에 대한 무단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재지사족이 자기규제를 통해 향촌 사회의 안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鄉射堂約條의 이러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실시되고 있던 율곡향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율곡향약에서는 사족이 무고하게 형을 받게 되었을 때와 중요한 민원과 관련하여 수령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하층민에 대해 상하 신분질서를 엄격히 하기도 하였다. 퇴계의 鄉射堂約條와 율곡의 향약이 다같이 향촌사회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鄉射堂約條와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鄉射堂約條가 하층민을 교화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족 자신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퇴계를 비롯한 사족들의 현실 인식에서 기인되었다고 여겨진다. 향속교화의 절실한 필요는 16세기 향촌사회 하층민의 流亡에서 오는 것이었다. 하층민의 유망은 가혹한 수탈에서 뿐만 아니라 재지사족의 무단행위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16세기 향촌문제는 예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종연간에는 여러 차례 조정에서 예안현의 잔폐가 논의될 정도였다. 중종 4년 1월에는 봉화, 예안 등의 잔업을 구폐할 방법을 논의하였다.<sup>62)</sup> 중종 36년(1542)에 당시 예안현감이었던 金守雍은 예안의 피폐함을 말하고 그 대책으로 안동부의 속현인 재산과 소천을 예안에 이속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sup>63)</sup> 이현보가 재차 이를 건의하였으니 연혁을 바꾸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수령을 가려 뽑는 것으로 피폐함을 보강하려 하였다.<sup>64)</sup> 하층민의 유망에서 오는 향촌사회의 불안정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재지사족의 차원에서도 근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층민의 교화라는 차원에서 향촌사회의 사족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교화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그 교화는 뿌리가 박히고 멀리 뻗어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선현의 훈도를 입었던 옛 향풍으로의 복귀는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인 교화와 통제보다는 사족의 역할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鄉射堂約條가 자기규제의 내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당시 하층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층민의 유망의 한 원인이었던 봉건정부의 수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시 재지사족의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퇴계와 예안 사족에 의해 마련된 鄉射堂約條는 그들의 향촌지배 기구인 유향소를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통제의 원칙도 주로 유향소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나, 이는 향론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다가 임란 후에 향사당에 게시되었다. 향론의 불일치는 예안 약조가 가지는 자기 규제라는 문제에서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확보한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과의 갈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향 사족의 공론에 의한 군현 단위에서의 향약 실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한 향촌지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후기 재지사족의 거주촌락을 중심으로 한 동계와 수령에 의한 군현 단위에서의 향약이 보다 보편화하게 된 사정을 전망할 수 있다.<sup>65)</sup> 아무튼 향약을 통한 예안 재지사족의 향촌안정책은

62) 『중종실록』 4년 1월 更子條.

63) 『중종실록』 37년 1월 癸巳條.

64) 『중종실록』 37년 3월 乙酉條.

일단 좌절되었으며 이후에도 재지사족의 무단적 행위는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4) 禁斷土豪侵店匠人田規書送留鄉所書

이 글은 琴蘭秀가 만력 계해년(1623)에 쓴 글이다. 예안현의 품관과 토민들이 산곡간에 살고 있던 장인들을 침학하여 또 다시 유리하게 하였는데, 이들 장인은 관가의 사환과 토민들의 요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장인의 유망은 곧 농민의 유망으로 귀결되게 마련이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禁斷土豪侵店匠人田規’<sup>66)</sup>로 명종22년(1567)에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이었다. 향약처럼 향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아닌 개별적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조치로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었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장인에 대한 침학은 다시 극심해지고 임란 후 과중해진 요역은 모든 장인을 유산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금난수는 임란 후 문란해진 향촌질서의 안정을 위해 장인의 유산을 막고자 禁斷規約과 匠店結卜數를 함께 책으로 엮어 유향소에서 이를 근거로 禁斷規約을 시행함으로써 폐단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보호되어야 할 匠店結卜數를 덧붙인 것이다.

아무튼 예안현의 禁斷規約은 품관과 토민의 침학에서 오는 장인의 유산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관가를 부지하고 농민들의 요역을 줄임으로써 향촌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결국 향촌사회의 안정은 기반세력인 하층민의 안정 위에 가능했고, 그 바탕위에 재지사족의 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

65)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앞의 책, 132~140쪽.

66) 이하 禁斷規約이라 칭함

## 제5장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

16세기 이후에 편찬된 사찬 읍지로서 편찬 당시의 예안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는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권시중이 『宣城誌』를 편찬함에 있어서 폭 넓은 자료를 인용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그는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고, 모르는 것은 묻고, 직접 답사를 통하여 눈으로 확인하였다.<sup>67)</sup> 그리고 그는 조사하고 기록한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검증받고자 하였다.<sup>68)</sup>

권시중이 『宣城誌』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三國史記』地理志·『壬寅案』·『高麗史』·『新增東國輿地勝覽』·『名宦錄』·『龍壽寺記』·『退溪集』·『月川集』·『龔巖集』·『慕齊集』·『豊基古迹記』·『東方登科錄』·『古事撮要』 등이며 당대명사들의 글과 시를 다수 인용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권시중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여러번의 고증을 거쳐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宣城誌』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宣城誌』 古跡條에 『勝覽』·『龍壽寺記』·『壬寅案』·『三國史記』地理志 같은 문헌을 인용하고 나서 자신이 답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성을 보이는데, 본거인물조의 李箴에 대한 기록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sup>69)</sup>

---

67) “나는 중년 이래로 일 때문에 삼척부 및 흥해군에 머물면서 『歷官錄』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동일한 시기였는데 또다시 『동방등과록』 및 『고사촬요』를 가져다가 조사해 보니 그 처음은 모두 같은 시대였다. 또한 令公 琴彦康 형에게 가서 토론하니 …”(『宣城誌』, 歷官錄跋)

68) “이상 옛 자취를 조사하고 살펴서 기록하였으나 자세하고도 현저한 것은 많지 않기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믿을 수는 없다. 드디어 조사한 것을 써서 아는 사람을 기다릴 뿐이다.”(『宣城誌』, 宣城古來先進)

69) “어떤 이는 말하기를 ‘李箴’은 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신이 정병이 되어 창을 잡고 대궐문을 지키면서도 항상 경전과 역사를 외워서 그곳으로 드나드는 벼슬아치들이 모두다 경문에 재주가 뛰어남이 이와 같았다면 어찌 그가 정병이 되었을 리가 있겠는가. 짐짓 그런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는 사람을 기다리겠노라 후손들의 말에 묘는 현 서쪽 답곡에 있으

둘째,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이다. 『宣城誌』에는 예안 지역의 명사였던 이현보·이황·조목·금난수·윤의정·임흘·금각 등의 글과 주세붕·류성룡의 글도 실려 있다. 그리고 예안 지역의 풍광을 읊은 시를 모아둔 題詠條의 17수의 시 외에 지역 명사들의 시를 포함하여 45명에 의해 쓰여진 총 72수의 시가 실려 있다. 또한 권시중은 『宣城誌』에 개인 문집이나 여러 기록에 누락된 것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예로 권시중 자신의 이야기인 ‘養老囊說跋文’의 경우 글을 지은 윤의정의 문집에는 내용도 다른 아주 짧은 발문이 실려 있음에 비하여 초고본 『宣城誌』에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은 윤의정의 문집이 일제시대에 2권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초고본 『宣城誌』를 참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다. 『宣城誌』에 실린 趙穆의 ‘埋誌石告文’·‘文集告成文’·‘刻天淵臺告文’도 『月川集』에는 일부분이 생략된 채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로서 높이 평가할 부분은 『宣城誌』를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 사실에 엄정한 평가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서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野史氏曰, 論曰 등으로 구분해 史評을 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책에서 사평은 물론 보이지 않으나, 歷官條에서 역대로 예안에 부임해 왔던 수령들 가운데 청렴했던 명관이나 고을을 잘 다스렸던 명관을 따로 빼내어 정리했다. 또 역대 수령 명단을 정리하면서 그 하단에 정치의 잘잘못을 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史評에 해당하며 공자의 ‘춘추필법’을 견지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권시중은 「歷官錄敍」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포폄의 원칙을 견지한 그의 역사기록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록을 펼쳐서 보며 차례로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아무개는 강직하고 분명하였으며, 또 아무개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며, 아무개는 평생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라고 하여 그들의 벼슬길이 비록 달랐다 하더라도 선과 악은 구별됨이 있었으니 두렵지 아니하겠는가?”

---

나 그의 사손들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이곳에 기록하지 못한다.”(『宣城誌』, 本居人物)

## 제6장 맺음말

이상에서 『宣城誌』가 가지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宣城誌』의 편찬자와 편찬목적, 체제, 내용, 그리고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편찬자인 권시중의 가문은 예안에 입향한 후 세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예안현의 대표적인 사족인 영천 이씨, 황성 조씨 등과 혼인관계를 형성한 예안의 유력 가문이었다. 권시중은 『永嘉誌』의 편찬자 권紀와 마찬가지로 퇴계의 재전 제자였다. 퇴계 학맥은 16·17세기 경상도 지방의 사찬읍지 편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권시중이 살았던 16·17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혼란기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宣城誌』 편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편찬목적은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지방수령의 읍치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첫째이고, 임란으로 파괴된 향촌 질서를 재지사족층이 중심이 되어 회복함으로써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보한다는 것이 둘째이며, 재지사족들의 위세를 현양하려는 것이 세째이고, 『승람』의 소략함에 대한 불만과 자기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려는 것이 넷째이며, 성리학적인 윤리관에 의거하여 변모하여가는 향촌 질서를 통제하려는 것이 다섯째이다.

체제는 『승람』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승람』이 관찬 전국지리지로서 예안현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에 비해 『宣城誌』는 지역 인사에 의해 편찬된 사찬읍지로서 예안현에 대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실고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예안현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뒷부분에서는 각 마을 별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 점이 『승람』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뒷부분의 각 마을에 대한 서술에서는 濫溪나 烏川에 관한 서술의 경우 마을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宣城誌』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永嘉誌』나 『威州誌』와 비교해서는 호구, 전결 등 경제적인 항목이 생략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永嘉誌』나 『威州誌』의 경우 수령이 읍지의 편찬에 간여한 결과로 보여진다.

『宣城誌』의 내용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역사와 인물·교육과 향촌사회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먼저, 권시증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족들의 유교적 자연관을 살필 수 있었다. 자연을 그 자체로서 보다는 인간의 생활무대로서의 역할과 그 결과로서의 흔적에 대해 더욱 가치를 두고 있었다. 둘째, 당시의 사족들이 중시하고 있던 자연환경은 ‘地勢’에 관련된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인물의 출생을 地氣·風水와 연관 되는 것으로 보는 풍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宣城誌』는 역사에 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建置沿革·郡名 등을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다. 建置沿革·郡名·古跡·名宦·歷官·人物·墓所齋舍 總名·各里 事蹟 등을 역사에 관한 항목으로 들 수 있으나 그 외의 항목들도 『宣城誌』 편찬 당시의 예안현의 사정을 자세히 담고 있으므로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宣城誌』의 역사에 관한 항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歷官·名宦·人物 등이다.

『宣城誌』의 歷官條는 권시증이 예안현감 이계지의 부탁을 받아서 후임 현감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歷官錄」을 삽입한 것이다. 「歷官錄」에 기록된 144명의 수령 가운데 조선조에 부임한 130명을 대상으로 부임기간과 교체사유, 품계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었다. 먼저 조선조에 부임한 130여명 가운데 부임기간이 명확한 수령 119명의 평균 재임기간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25.5개월로 선초 이래 수령의 임기는 30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길지 않은 기간이며, 수령의 교체가 잦았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왕들의 재위 시기별로 수령들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성종 연간에 부임한 7명이 45.6개월로 가장 길고, 인조 연간에 부임한 17명 중 재임기간이 명확한 16명이 18.5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가 안정되면 수령의 재임기간이 늘어나 향촌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나, 정치의 혼란에 따른 잦은 수령의 교체는 다시 지방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령의 교체 사유로는 파직이 가장 많았으며, 파직으로 인한 교체는 임란 전후로 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파직으로 교체된 37명중 임란이후에 부임한 수령이 34명이나 되며 이는 임란 이후에 예안현에 부임한 44명의 77%나 되는데, 이는 임란 이후에 그만큼 지방 통치 행정이 문란해졌

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수령들의 품계를 살펴보면 경국대전의 규정상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예안현에 종6품의 경우는 17명에 지나지 않고, 정3품에 해당하는 통훈대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임란 이후에는 예안현에 더 이상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지 않고 있으며, 임란 후 예안현에 부임한 수령 중 정3품 통훈대부는 43.4%에 달했다.

『歷官錄』에는 善治名官을 적어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권시중의 수령관을 파악할 수 있다. 권시중이 선치관으로 뽑는 수령은 청렴정직하면서도 공평하고 명쾌한 일처리를 통하여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수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宣城誌』 전체에서 인물에 관계되는 항목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寓居·孝子·宣城名賢軒號·始居·古來 先進·南行·各里 事蹟 등의 인물 관계 항목외에도 山川·樓亭·學校 등의 항목도 모두 인물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인물과 관계된 항목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인물의 중복이 심하다는 것과 인물을 소개할 때는 祖先을 먼저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宣城誌』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인물들은 대개 몇몇 가문에 집중되는데 永川 李氏·眞寶 李氏·光山 金氏·安東 權氏·禮安 金氏·奉化 琴氏·橫城 趙氏 등이 대표적인 가문이다. 예안현을 대표하는 이들 사족 가문들은 토성인 예안 김씨를 제외하면, 대개 妻鄉을 따라 15세기경에 移居해 온 사족이다. 이들은 예안현에서 登科와 혼인관계 등으로 명문 사족으로 부상하였음을 『宣城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宣城誌』의 내용중 당시 예안지역의 교육과 향촌사회운영과 관계된 내용으로는 樓亭·學校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樓亭과 學校는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족들의 생활 공간이다. 그리고 학교조에는 향교 외에 역동·도산서원의 건립경위와 구조를 기록하고, 鄉射堂約條와 禁斷土豪侵店匠人田規書送留鄉所書를 싣고 있다. 이는 민들과 차별화된 사족들의 위세를 현양하고, 임란 이후 민의 유망으로 혼란해진 향촌의 질서를 사족 중심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사족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宣城誌』의 사료적 가치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宣城誌』가 폭넓은 자료를 인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둘째 명사들의 글

과 시가 많이 실려 있고 개인 문집에 누락된 내용까지 신고 있어 문학적 자료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셋째 『宣城誌』를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 사실에 엄정한 평가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宣城誌』의 높은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내용의 중복이 심하고 체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신의 씨족인 안동 권씨에 비중을 두고 있고, 스승인 월천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이 필요치 않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宣城誌』가 『永嘉誌』처럼 여러 차례 수정되어 간행되지 않고 초고본 완성 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간 초고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초고본이 쓰여질 당시의 예안 지역 사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단순한 향토애에서 출발한 『宣城誌』 연구는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제대로 구명되지 못한 듯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더 훌륭한 연구자에 의해 『宣城誌』의 진가가 드러나고 사료로 훌륭하게 쓰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기본사료>

『宣城誌』, 『永嘉誌』, 『咸州誌』, 『慶尙道邑誌』,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宣城邑誌』, 『中宗實錄』, 『宣祖實錄』, 『經國大典』

### <단행본>

-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1983.
- 서울대학교출판부, 『해동지도』 권1, 1995.
-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대동보』 권3, 1982
- 안동시사편찬위원회, 『安東市史』 권1, 영남사, 1999
- 이수건,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_\_\_\_\_,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_\_\_\_\_, 『한국중세사 연구』, 민음사, 1989.
- \_\_\_\_\_,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이중환저, 이익성 역, 『택리지』, 한길사, 1992.
- 이태진, 『한국사회사 연구 - 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1986.
- 이태진 외,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3.
- 이해준 외,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 행정연구』, 집문당, 1999.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향촌사회연구회, 『조선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1990.

### <논문>

- 강창룡, 「16세기 사찬읍지의 연구 - 『咸州誌』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동수, 「『세종실록』지리지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경수, 「鄭述의 咸州誌 연구」, 『于江권태원정년논총 민족문화의 계문제』, 1994
- 김무진, 「조선중기 사족층의 동향과 향약의 성격」, 『한국사연구』55, 1986.
-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론 8 - 조선 전기 서원과 향약』, 1980.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_\_\_\_\_,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27호.
- \_\_\_\_\_,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제4집, 1997.
- 유승중, 「조선후기 공주지방의 읍지편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윤용혁, 「조선후기 공주읍지의 편찬과 공산지(1985) - 지방읍지의 연구」, 『공주사범대논문집』 19, 공주사대, 1981.
- 이문중, 「17세기초 서산지방의 지리적 상황-호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4호, 석천 이찬박사 고회기념 특집호, 1992.
- 이상태,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의 재검토」, 『芝村金甲周화갑기념 사학논총』, 1994.
- 이성무, 「한국의 관찬지리지」, 『규장각』 6, 서울대도서관, 1982.
- 이태진,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47, 1979.
- \_\_\_\_\_, 「사람과의 향약보급운동」, 『한국문화』 4, 1984.
- 이해준, 「사족과 향촌 사회」, 『한국사학연구입문』, 한국역사연구회, 1995.
- \_\_\_\_\_, 「조선전기 향촌 자치제」, 『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임선빈, 「조선초기 수령제도의 변천과 운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임세권, 「永嘉誌 편찬의 역사적 의의」, 『안동문화』 7, 1986.
- 정구복,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대한 일고 -역사지리학과 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북사학』2, 1978.
-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1·2)」, 『역사학보』 69·70, 역사학회, 1976.
- 정청수, 「조선조의 지리지에 나타난 사회설명 의 원리 -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본 조선조 지식계층의 인식체계의 특징」, 『한국사회와 사상』, 한국정신문화원, 1984.
- 최윤진, 「16·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17, 전북대사학회, 1994.
-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58, 1984.
- 홍제연, 「16·17세기 서산지역의 사족동향 -『호산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A Study of 『Seonseongji』

Lee Bu-gyeong

*Majoring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Seonseongji』 is the town book of Yean-hyeon compiled by Gwon Si-jung in the early 17th century. This study set ou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features and meaning of 『Seonseongji』 by investigating its compiler, the purpose, system, contents and the value as a historical record.

Gwon Si-jung, the compiler of 『Seonseongji』, was from one of the prominent families in Yean area. He was a member of the Toigye school,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ivate compilation of town books in the Gyeongsang province in 16th and 17th century. The period of 16th and 17th century when Gwon lived was one of turmoil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the Manchu War of 1636. This background of the times seems to have given a huge influence on his compilation of 『Seonseongji』.

There can be found five compilation purposes of 『Seonseongji』. First, it was intended to help the local governor with his leadership over the area. Second, it was to help the resident nobles to keep their governing power over the country districts by recovering the order of the country districts that was damaged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main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obles. Third, it aimed to raise the authority of the resident nobles. Fourth, it was the product of the discontent with the simple presentation of 『Donggukyeojiseungram』 and of the efforts to express the pride of the local tradition and culture. Finally, it tried to control the order of the country districts that were changing based on the ethics of Neoconfucianism.

The system of 『Seonseongji』 follows that of 『Donggukyeojiseungram』. But it contains more contents of Yean-hyeon as a privately compiled town book compared to 『Donggukyeojiseungram』 that was compiled by the government and covered the whole nation. Another difference between them is found in that the first half of 『Seonseongji』 covers Yean-hyeon in general terms and the latter half of it depicts the area by villages. The difference between 『Seonseongji』 and 『Yeonggaji』 and 『Hamjuji』 both of which were compiled in the similar period as 『Seonseongji』 is that 『Seonseongji』 omits economic parts such as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and the taxes imposed on dry and rice fields.

The contents of 『Seonseongji』 were categorized into those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those of history and figures, and those of education and operating the country districts for the purpose of analysis. First, the contents describing the natural environment showed the Confucian sense of nature the nobles of the times had. Second,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at received the attention of the nobles was about 'geographical features.' Third, a large portion of the contents were concerning geomancy, which suggested that birth of figures were connected to the spirit of the ground and winds and waters.

『Seonseongji』 is the most rich in contents about history, particularly focusing on official in the local history, famous officials and figures. Gwon Si-jung wrote 『Yeokgwanrok』 by the request of Lee Gye-ji, the current governor of the Yean area, who wanted to leave some lessons with his successors. The part of Yeokgwanjo in the 『Seonseongji』 is solely

comprised of the 「Yeokgwanrok」. In 「Yeokgwanrok」 was such information included as about the term of office, reason of replacement, and changes of ranks of the appointed officials during Chosun Dynasty. Gwon expressed his ideas of what an ideal official should be like in the part of the good local governor in 「Yeokgwanrok」.

Figures receive the most important attentions in 『Seonseongji』. In particular, some families were put a lot of value on in 『Seonseongji』. They included Yeongcheon Lee family, Jinbo Lee family, Gwangsan Kim family, Andong Gwon family, Yean Kim family, Bonghwa Geum family, and Hoingseong Jo family.

In 『Seonseongji』, the educa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try districts in the Yean area of the times were depicted, especially in terms of pavilions and schools. These contents were the efforts of the nobles to heighten their author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dinary people and to recover the order of the country districts that was in such a confusion since the Japanese invasion mainly under their leadership.

The value of 『Seonseongji』 as a historical record can be summarized in three. First, a wide range of data was quoted in 『Seonseongji』 and objectivity was pursued throughout it. Second, it has enough literary materials of value. Third, 『Seonseongji』 is based on the strict assessment of historical facts.

Despite these values of 『Seonseongji』 as a historical material, it has a couple of weaknesses. First, it has many contents repeated and its system is not arranged well. Second, it fails to achieve the overall balance. But nobody would deny that it provides such important information to understand what it was like in the Yean area when its manuscript was written in that 『Seonseongji』 had increasingly gotten out of people's atten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anuscript.

附錄 <별표1>歷官錄에 나타난 조선시대 예안현감의 재임실태

번호	관직	赴任 수령	부임 년월	이임 년월	재임기간 (개월)	교체 이유
1		卞雍	1392. 10	1393. 6	9	
2	宣務郎	鄭肖	1393. 11	1395. 6	18	監察에 배명
3	通德郎	成路	1395. 6	1396. 6	13	
4	承議郎	蔡顥	1396. 6	1398. 11	28	禮賓寺 主簿에 배명
5		李文命	1398. 11	1400. 1	15	永川으로 移任
6		權踐	1400. 2	1400. 7	6	北部舍에 배명
7	宣務郎	吳淑	1400. 8	1401. 7	12	母親喪
8	奉訓郎	尹興義	1401. 8	1402. 7	12	
9		成揜	1402. 8	1403. 11	16	廣州로 移任
10		成守良	1404. 2	1404. 11	10	
11	奉直郎	朴原禮	1405. 1	1406. 윤7	19	
12	通德郎	高士原	1406. 8	1409. 2	31	禮賓寺 主簿에 배명
13	承議郎	羅尙之	1409. 3	1411. 9	31	內贍主簿에 배명
14	宣敎郎	朴好生	1411. 9	1411. 12	4	
15	奉直郎	金世淳	1412. 1	1412. 10	9	
16	承訓郎	金吉德	1412. 10	1415. 9	35	內贍主簿에 배명
17	宣務郎	姜友德	1415. 9	1416. 12	15	
18		鄭介保	1416. 12	1417. 12	12	
19		庚叻	1417. 12	1418. 7	7	
20	通德郎	閔好禮	1418. 7	1418. 12	6	
21	宣務郎	曹世範	1419. 1	1421. 3	25	
22	宣敎郎	李永茂	1421. 3	1422. 10	19	
23	通德郎	朴潔	1422. 10	1427. 7	57	護軍에 배명
24	宣敎郎	鄭斯仁	1427. 7	1429. 11	29	母親喪
25	承訓郎	趙夏	1430. 1	1434. 12	48	都官佐郎에 배명
26		宋繼商	1435. 1	1439. 3	51	父親喪
27	宣敎郎	愼言	1439. 4	1442. 12	45	
28	宣務郎	崔士老	1443. 1	1444. 2	13	病
29	宣務郎	丁續宗	1444. 2	1444. 7	5	
30	宣敎郎	權倦	1444. 7	1445. 11	17	父親喪
31		文汝衡	1445. 12	1448. 12	37	父親喪
32	奉訓郎	趙增	1449. 2	1451. 7	29	
33	承訓郎	鄭係	1451. 7	1452. 7	12	
34	宣務郎	權景行	1452. 7	1455. 12	42	
35		崔資	1456. 1	1456. 2	2	繼母喪

번호	관직	赴任 수령	부임 년월	이임 년월	재임기간 (개월)	교체 이유
36		曹變興	1456. 4	1460. 3	48	사망
37	通善郎	安億壽	1460. 5	1464. 1	44	通德郎으로 遞職
38		郭孝恭	1464. 1	1464. 12	12	
39	通善郎	姜漢伯	1465. 2	1466. 3	13	
40		盧敬信	1467. 7	?	?	辭任狀을 올려 遞職
41		許斯孝	1468. 2	1473. 2	61	典監司 別提로 傭김
42		金貴知	1473. 3	1476. 2	36	
43		李持	1476. 3	1481. 3	61	司導寺 主簿로 傭김
44	奉訓郎	韓伋	1481. 5	1482. 7	15	
45	奉直郎	李義根	1482. 8	1487. 9	61	司宰監 主簿로 傭김
46	承訓郎	李管林	1487. 9	1490. 9	37	圖畫署 別提로 傭김
47	宣務郎	金詮	1490. 10	1494. 10	48	黃澗縣監
48	承訓郎	盧允釐	1494. 10	1495. 7	10	
49	通善郎	金禮生	1495. 8	1498. 6	35	
50		權休	1498. 9	1501. 7	34	
51	通訓大夫	裴季厚	1501. 7	1503. 6	24	
52	中直大夫	劉永正	1506. 3	1507. 2	12	雜科로 체직
53	宣敎郎	韓休	1507. 3	1509. 4	25	동생이 서얼을 낳은 일로 파면됨
54	通訓大夫	洪義孫	1509. 6	1514. 1	56	
55		金濟	1514. 3	1514. 11	9	
56		崔決	1514. 12	1516. 7	20	
57	承議郎	申樽	1516. 9	1519. 7	35	
58	通訓大夫	趙守忠	1519. 9	1521. 7	23	
59		安範	1521. 10	1522. 9	24	病으로 사직
60	朝散大夫	鄭公徵	1522. 11	1526. 11	49	
61		洪胤昌	1527. 2	1530. 8	43	
62		郭瑋	1530. 10	1532. 4	19	
63	通訓大夫	朴仁範	1532. 7	?	?	과직
64		金自湖	1537. 2	1540. 7	42	
65	宣敎郎	金守雍	1540. 9	1543. 3	31	
66		金世憲	1543. 7	1544. 2	8	
67	承議郎	任籍臣	1544. 3	1549. 1	59	黃海都事에 배명
68	通訓大夫	趙應卿	1549. 3	1549. 5	3	사망
69		李秀枝	1549. 7	1555. 9	3	사망
70		李鳳壽	1550. 11	1555. 11	61	

번호	관직	赴任 수령	부임 년월	이임 년월	재임기간 (개월)	교체 이유
71		柳靜	1555. 12	1556. 9	10	
72		魚叔義	1557. 1	1562. 1	61	
73	通善郎	梁成海	1562. 1	1562. 11	11	
74	宣敎郎	郭越	1563. 2	1568. 2	61	
75	奉直郎	鄭惟一	1568. 2	1568. 12	11	弘文館 校理에 제수
76		孫英濟	1569. 1	1574. 8	68	
77	通德郎	柳夢鼎	1574. 10	1577. 8	35	
78		羅薰國	1578. 1	1578. 7	7	
79	通訓大夫	李俊宗	1578. 9	1581. 9	37	
80	宣敎郎	李軸	1581. 11	1582. 3	5	
81	承議郎	金夢熊	1582. 5	1582. 9	9	
82	朝散大夫	高應陟	1582. 11	1583. 3	5	
83	朝奉大夫	郭懷瑾	1583. 4	1588. 1	58	
84	通德郎	鄭士信	1588. 2	1589. 3	14	서울에 잡혀가 파직
85		鄭應台	1589. 2	1590. 5	14	
86	承議郎	申之悌	1590. 7	1596. 9	75	임진왜란으로 임기만료 후 1년간 더 머물렀음
87		金廷龍	1596.10	1599. 9	36	파직
88		金就義	1599. 9	1601. 6	22	향교에서 내쫓기고, 중앙에 보고되어 파직
89	奉直郎	崔光弼	1601. 7	1603. 1	19	파직
90	通德郎	安旭	1603. 2	1603.11	10	향교에서 중앙에 보고하여 제직
91		曹次石	1604. ?	1605. 7	?	出府
92		鄭浹	1605. 8	1607. ?	?	파직
93		安聘壽	1607. 2	1608. 5	16	파직
94		朴善長	1608. 7	1609. 3	9	파직
95	承訓郎	金自漢	1609. 4	1610. 3	12	出府
96		朴埠	1610. 4	1612. 8	29	파직
97	通訓大夫	李繼祉	1613. 9	1619. 3	66	
98	通訓大夫	李寬	1619. 3	1621. ?	?	
99	通訓大夫	李德溥	1622. 5	1623. 3	11	
100	通德郎	金靜厚	1623. 5	1623. 윤10	6	파직
101	通訓大夫	楊時	1623. 11	1625. 4	18	암행어사에 의해 보고되어 파직
102	通訓大夫	金寧	1625. 7	1625. 12	6	파직
103		高仁繼	1626. 5	1626. 8	4	사임
104		金瑑	1626. 10	1630. 9	48	의금부에 의해 보고되어 파직
105		羅茂松	1630. 11	1631. 7	9	향교에서 쫓겨나고 중앙에 보고되어 파직

번호	관직	赴任 수령	부임 년 월	이임 년 월	재임기간 (개월)	교체 이유
106	通訓大夫	洪錫禹	1631. 8	1631. 12	5	관리성적평가에서 중하등으로 파직
107	奉直郎	琴尙絃	1632. 3	1632. 11	9	경차관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어 파직
108	通訓大夫	金養誠	1632. 12	1634. 6	19	관리성적 평가에서 하등을 받아 파직
109	朝奉大夫	南堧	1634. 8	1635. 10	15	파직
110	奉烈大夫	朴景元	1635. 12	1636. 11	12	도체부에서 조정에 보고하여 파직
111	通訓大夫	金慶厚	1636. 12	1637. 6	7	향교에서 쫓겨나고 중앙에 보고되어 파직
112	通訓大夫	李慶恒	1637. 7	1638. 2	8	사임
113	通訓大夫	梁楸	1638. 4	1640. 10	31	조정에 보고되어 파직됨
114	通訓大夫	孫必大	1641. 11	?	?	서울로 가서 돌아오지 않음
115	朝散大夫	黃立信	1643. 10	1644. 6	9	관리성적 평가에서 하등을 받아 체직
116	通訓大夫	金光宇	1644. 7	1649. 7	61	임기만료로 체직
117	通訓大夫	洪宇遠	1649. 10	1652. 2	29	母親喪
118	通訓大夫	鄭維地	1652. 3	1653. 12	22	관리성적 평가에서 하등을 받아 파직
119	通訓大夫	韓得一	1654. 2	1657. 1	36	어사의 보고로 파직
120	通訓大夫	權礪	1657. 2	1657. 2	1	3일만에 파직
121	通訓大夫	姜好碩	1657. 4	?	?	파직
122	通訓大夫	鄭東燁	1658. 2	1660. 9	34	파직(무고)
123	通訓大夫	申墻	1660. 12	1661. 6	7	관리평가로 파직
124		李碩寬	1661. 8	1663. ?	?	봉화현감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파직
125		韓聖輔	1663. 9	1668. 5	57	임기만료로 체직
126		李斗光	1668. 8	?	?	差使員에 의해 보고되어 파직
127		李世基	1673. ?	?	?	파직
128		李泰夏	1676. 2	1678. ?	?	파직
129		趙待憲	1678. 1	1678. 11	11	파직
130		李裁吉	1679. 1	1684. 3	63	임기만료로 체직